

2006 세계인권선언 58주년 기념 인권토론회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 중에서

| 일시 | 2006년 12월 6일(수) 13:30
| 장소 | 울산광역시 의회 3층 대회의실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 주관 | 1218이주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토론회

2006 울산지역 인권현황과 과제

일시 2006년 12월 6일 (수) 13:30

장소 울산광역시 의회 3층 대회의실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주관 1218이주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프로그램

시 간	세 부 내 용
13:30~13:40	등 록
13:40~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장 이광영 ◆ 축 사: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장태원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13:50~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최민식 대표(울산인권운동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제1: 오문완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 ◦발제2: 이광영 소장(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1: 최종건 장학사(울산광역시 교육청) ◦토론2: 김옥진 회장(울산장애인부모회) ◆ 인권침해 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3: 정성학 수사1계장(울산지방경찰청) ◦토론4: 박영철 사무국장(울산인권운동연대)
15:10~15:20	휴 식
15:20~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차별 현황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5: 김주영 대표 (울산여성회) ◦토론6: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 노동자배움터) ◦토론7: 이남진 팀장(1218이주노동자지원센터)
16:50~17:10	종합 토론
17:10~17:20	정 리

글 심는 순서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 ◆ 발제1 / 울산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관·NGO의 역할 — 03
오문완(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 발제2 / 지역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의 역할- 15
이광영(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장)

1. 인권교육현황과 과제

- ◆ 토론1 / 교육권 확대 실현을 위한 현황과 과제(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33
최종건(울산교육청 장학사)
- ◆ 토론2 /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39
김옥진(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2. 인권침해방지 대책

- ◆ 토론3 / 울산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47
정성학(울산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 ◆ 토론4 / 인권침해 방지대책—— 57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3. 인권차별 현황과 과제

- ◆ 토론5 / 성차별의 현황과 과제—— 65
김주영(울산여성회)
- ◆ 토론6 /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애플 권리도 없다—— 75
안기호(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 ◆ 토론7 / 진정 열린 사회를 꿈꾸며—— 103
이남진(1218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참고자료—— 125

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토론회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울산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관·NGO의 역할

발제1. 오문완 (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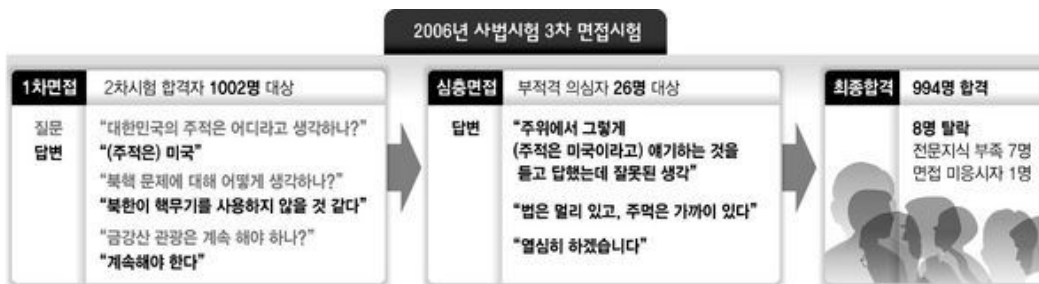
울산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관·NGO의 역할

오문환
(울산대학교 법학과)

I.

저한테 주어진 과제는 <울산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관·NGO의 역할>에 대해 개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권과 관련해서 울산 특유의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지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이곳에서는 인권 일반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풀기 위해 먼저 두 가지 기사를 소개합니다.

1. “주적은 미국” 답변 반복 수험생은 사시 3차통과



제48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부적격 의심자’로 분류돼 심층면접을 받은 26명 가운데 7명이 최종 탈락했다. 최근 10년 동안 사시 면접에서 떨어진 응시자는 단 한 명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전문지식 답변 못해 탈락”<생략>

사상 검증 논란=하지만 2단계로 이뤄진 이번 면접시험에선 “대한민국의 ‘주적’은 미국”, “북한이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한 응시자를 심층면접 대상으로 삼아, ‘사상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의 ‘합격자 토론방’에 글을 올린 응시자는 “저는 ‘주적이 없다’고 했다가 심층면접에 갈 뻔했습니다. 면접 말미에 심층면접에 가서 주적에 대해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 동의하냐고 하더군요”라고 밝혔다. ‘주적’을 묻는 질문에 한 응시자는 “미국”이라고 답했다가 심층면접에 회부됐지만, 면접위원들이 “단순한 반미감정”이라고 판단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응시자는 “심층 면접관들이 ‘자네는 너무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했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게 심층면접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다”라며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그때 저를 보던 면접관이 고개를 가우뚱거렸고, 그것이 저를 ‘편향된 사고를 가진, 심층면접을 요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면접 때 여러가지를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며 ‘주적’을 묻는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단편적인 질문을 가지고 사상검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호창 사무차장은 “국방부도 이미 폐기한 개념인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면접시험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¹⁾

2. 몸 사리는 인권위...사법부에 권고 'NO'

오는 25일로 설립 5주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권시민단체들의 시선은 더욱 따갑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실패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오류는 인권을 정치 도구화하는데 무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민중이 아닌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기득권층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것.

1) 한겨레신문, 2006년 11월 28일자.

4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진보와 보수의 각축장 된 인권위?

이 대표는 21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 인권정책 평가토론회' 발제를 통해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는 인권을 전면화하기 위한 투쟁과 인권의 제도적 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음모가 공존했고 인권위는 이 두 극단의 각축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부와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인권위의 인권기준과 인권실천 방향이 정해졌다"며 "설립초기에 국가·시민·사회·인권활동가·인권전문가·인권피해자의 인권공동체 형성이라는 명제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인권위 해체론에 대해서는 "다분히 이익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국민 참여의 폭을 늘려 중앙행정부서화하는 이른바 인권위 강화론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어진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사법부 앞에 몸을 사린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김도현 동국대 교수는 "인권위는 사법부의 재판이나 인권과 관련한 정책·관행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데도 지난 5년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조문을 사문화시켰다"며 "이는 인권위 위원의 거의 절반을 법조계 및 법학계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주눅든 인권위...국가기관 맞나

김 교수에 따르면 인권위가 사법부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낸 경우는 헌법재판소 재판에 한 건뿐 법원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다. 2003년 '호주제는 위험'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한 건의 결정 마저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공식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사법부에 대한 소극적이며 자기제약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인권위의 성격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국가기관 중 가장 적극·선진적으로 인권전략과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인권위의 이런 태도는 시민사회의 지지기반을 붕괴시켜 마침내 존립 토대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인권위가 법에 명시된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인권위가 사법부에 몸을 사리는 것은 인권 감

수성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인적 구성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 평균 4000여 건 진정...실질 구제는 4.1%에 불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8월 31일 현재 2만654건. 한 해 평균 4000여 건의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 시정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구제조치를 취한 진정은 846건(4.1%)에 불과하고 대부분 각하(1만3384건, 68.9%) 및 기각(4576건, 23.6%) 결정났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진정사건 대부분이 조사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어 국민들의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국가의 피해구제기능이 형식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구조적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질적인 피해구제조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²⁾

하나는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을 잘 알려주는 에피소드일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인권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읽을만합니다.

II.

그러면, 인권은 과연 인류 보편의 가치인가?

먼저 인권의 역사를 훑어보지요. 현대 우리의 학문이라는 게 서양 학문을 받아들인 거라, 동양의 이야기는 미루어 두고, 서양에서의 흐름을 대강 훑어 보겠습니다.

(1) 고대에는 소포클레스의 희곡 <안티고네>가 대표적인 애깃거리가 됩니다. 법학에서는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를 논하는 매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권(神權) 이야기지 무슨 인권 이야기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인간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권이 현대판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중세에는 대헌장(Magna Carta Libertatum, 1215)을 들 수 있습니다. 대헌장이라는 게 귀족의 놀음이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역시 당시 권리의 주체는 왕에서 간신히 귀족도 포함돼 갈 때라 현재와 같은 평면에서 논의하기는 힘들겠지요.

2) 오마이뉴스, 2006년 11월 21일자.

6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3) 근세에 와서는 (계몽주의의 산물로) 세계사에 등장했던 많은 권리선언들이 있습니다.

(4) 그러나 역시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에 와서 인권은 가장 온전하고 통합적인 모습으로 제도화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에서 인권의 시점을 1948년으로 잡고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미셸린 이샤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극히 다양한 문화, 종교, 정치 전통에서 공통된 인권의 표현방식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유엔)인권위원회의 수임 사명이었다. 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새로운 보편 윤리를 찾는 과정에서, 인권철학 전통의 역사가 ‘좁은 서구의 전통의 범위’를 벗어나 폭넓게 존재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권의 탄생이 철학의 탄생과 함께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뜻에서 인권위원회는 선언문 기초 작업에 착수할 때부터 원칙을 세워 보편적 인권이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에서 기원한 서구의 발명품이라는 가정을 거부하였다. 그 대신 위원들은 계몽주의 인권사상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었던 공동선에 대한 어떤 보편적 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전세계의 위대한 종교·문화 전통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오랜 토론의 결과가 1948년 12월 10일, 인류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세속적·종교적 인권개념을 집대성한 최고의 국제 인권문헌인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졌다.”³⁾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정부문서보관소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문서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한 커스틴 셀라스는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것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의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인권은 흔히 추상적인 도덕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정치라는 토대에 발을 딛고 있으며 똑같은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정부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인도주의 정책을 선보이고, 다른 나라의 인권탄압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그러나 그 정부도 필요할 경우에는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인권을 무시한다. 인권운동가들은 항상 정치인들에게 선택적인 인권정책을 지양하고, 탄압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한다. 일리가 있는 비판이지만, 정치인들에게는 탐탁치 않은 이야기다. 정치에서는 실리주의가 지배한다. 그들에게 ‘더’라는 것은 대개 ‘같은 것을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 존 F. 케네디의 금언을 인용하자면, 정부는 ‘인권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⁴⁾

3) 미셸린 이샤이(조효제 옮김),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56쪽.

하지만, 셀라스 역시 인권 담론의 중요성에는 동의합니다. “오늘날 인권은 더 이상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인권은 현대 정치담론의 공용어(lingua franca)가 되었다. 9·11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미래를 사로잡을 이슈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반테러리즘이 가장 큰 화두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인권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도덕적 호소력을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 강력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인권은 당분간 서방의 의제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⁵⁾

이러한 인권 담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결국 보편적 인권의 필수요소인 안전·시민·사회·경제적 권리와 부합하면서 화해를 향한 장기적 접근을 가능케 해주는, 인권의 통합적 세계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미국식의)일방적 세계전략이 아니라 UN과 다자간 국제기구, 그리고 현지 NGO를 통한 노력이라는 일반원칙을 인권정책의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⁶⁾

III.

이제 이러한 이론적 틀에 근거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지요.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구로 기능을 한다고 생각되는 곳은 세 주체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국가(지자체) 권력기관, 인권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ombudsman,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러합니다.

1. 먼저 권력기관의 인권보호 기능을 보겠습니다.

흔히들 형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 사회, 국가적인)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은 물론이고 범죄인까지도 포함해서)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권력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 법익보호기능에는 충실한데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의)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에는 둔감했던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는 통계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4) 커스틴 셀라스(오승훈 옮김),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은행나무, 2003, 22-23쪽.

5) 커스틴 셀라스, 350-351쪽.

6) 미셸린 이샤이, 599-600쪽.

8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5년 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총 21,598건)을 보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압도적입니다. 차별행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⁷⁾,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권력기관의 인권 의식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인권위에 진정된 진정 사건>

유형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차별행위	법령과 제도 개선
건수(비율)	17,263건(79.9%)	2,639건(12.2%)	1,696건(7.9%)

그런데 실은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제도 자체에 내재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관료제의 병폐입니다. 관료제는 능률성, 과학적 합리성(scientific rationality)을 추구합니다. 투자비용 대비 산출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수단의 적실성,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때문에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 즉 시민의 정치적 요구(민주성)에 부응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다양한 형태의 행정실패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관료로 하여금 전문가적인 판단과 식견에 따라 행정과제를 수행토록 하려면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주어야 하는데, 이 재량권이 관료로 하여금 사적이고 부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미끼 구실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행정과정의 자의성, 불합리성, 불공정성, 차별성, 오류, 실수 등이 나타납니다. 법규중심주의는 형식주의나 무사안일주의를, 문서중심주의는 행정의 지체를, 정차중심주의는 행정의 경직성, 획일성을 불러옵니다.⁸⁾

이러한 행정권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필요는 점증하고 있고, 시민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찰 스스로 내부정화장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제나 인권보호센터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들 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나 시민인권보호단과 같은 국민참여형의 인권감시기구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7) 김창석, “인권위 5년, 사회에 인권을 선물하다”, 한겨레 21, 제637호(2006.12.5.), 18-20쪽.

8) 박재창, “전문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수요와 논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포럼 공동세미나 자료집 「군사경찰 옴부즈만의 제도화 방향」, 2006.11.14., 5-8쪽.

2. 다음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권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권고를 발할 뿐 실행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옴부즈만은 본질적으로 비권력기관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존재 의의가 있기도 합니다. 권력기관이라면 옥상옥의 장치가 되겠지요.

지난 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5년 동안 인권위가 법률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에 권고한 것은 모두 128건이라고 합니다. 검토 중인 36건을 뺀 92건 중 수용 74건, 수용 거부 18건으로 나타나 수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80.4%). 차별행위에 대한 수용률은 90.2%에 이른답니다.⁹⁾ 고충처리위원회 쪽 통계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역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부산 인권위원회에 미루겠습니다.

다만,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정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한편 전문 옴부즈만으로 경찰과 군사 옴부즈만을 두기로 한 것은 진일보로 평가되고,¹⁰⁾ 각 분야의 전문 옴부즈만의 설치를 기대합니다.

3.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입니다.

현재 시민단체의 위기를 말하고 활로에 대한 고민이 대단한 듯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권을 이야기할 때 시민단체야말로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는 자연권의 영역으로서 정당화되었지만, 국가는 이러한 보편적 권리를 시행한다는 측면에서만 정당화되었다고 합니다. 토머스 페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사회는 우리의 부족한 점 때문에 생겨나고, 정부는 우리가 사악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시민사회는 인간의 우애를 단합시켜 우리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반면, 정부는 우리의 악덕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행복을 소극적으로 촉진한다. 시민사회는 상호 교류를 장려하지만, 정부는 상호구분을 창조한다. 전자는 후견자이나 후자는 징벌자이다.”¹¹⁾

조효제 교수는 시민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하고 있습니다.¹²⁾

9) 김창석, 18쪽.

10) 앞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포럼 공동세미나 자료집 「군사·경찰 옴부즈만의 제도화 방향」, 2006.11.14. 참조.

11) Thomas Paine, *Common Sense*, 번역은 조효제 교수(미셸린 이사이, 538쪽).

10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시대별 인권의 구조적 역학>

	국가	시민사회(공적 영역)	사적 영역
중세 시대	강력한 봉건권력	태동기	억압
계몽주의 시대	왕권 약화	도시 영역 등장	부르주아 가정 분화
산업혁명 시대	봉건국가 약화	사회집단 투쟁 강화	여성권리 의식 강화
반식민투쟁 시대	민족주의의 국가 장악	시민사회 결여	국가 통제 유지
지구화 시대	국가 약화	시장 강화/공적 영역 분절화	국가/시장 공세 강화

결국은 개인을 포함한 네 주체 모두가 인권의 보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해 가는 데 우리의 인권은 신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더 부연하겠습니다.

인권의 필수요소인 안전·시민·사회·경제적 권리와 부합하면서 화해를 향한 장기적 접근을 가능케 해주는, 인권의 통합적 세계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미국식의) 일방적 세계전략이 아니라 UN과 다자간 국제기구, 그리고 현지NGO를 통한 노력이라는 일반원칙을 인권정책의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울산 버전이야말로 ‘울산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관·NGO의 역할’ 일 것입니다.

12) 미셸린 이샤이, 12쪽에 실린 옮긴이 서문.

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토론회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지역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의 역할

발제2. 이광영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지역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의 역할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부산지역사무소"

I. 들어가며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을 맞았지만은 부산지역사무소는 이제 겨우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은 결국은 아쉬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관할 범위로 두면서도 얼마나 울산 경남 지역을 위해 업무를 하여 왔는지 반성해 봅니다. 부산을 제외한 지역민의 인구수가 40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지역사무소를 인권침해 권리 구제기관으로서 활용되지 못함은 홍보부족이나 인식부족이라는 것을 떠나 지역사무소의 노력부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역 접근성 강화라는 기본 목적하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였지만 애초 기대만큼 지역민들을 위해 우리가 부응을 하여 왔는지는 짚어야 될 대목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치를 보더라도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및 인권 상담률인데, 예상치 보다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다양한 인권컨텐츠를 통한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달인데 이것 또한 아무래도 부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사무소가 나름대로 부산을 제외한 지역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과정과 결과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이 노정되었습니다. 지역 내에는 많은 인권 시민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민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과 지역의 NGO 인

권단체들과 함께 인권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보고 또한 지역사무소로서 지역민의 인권침해에 따른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지를 함께 모여 토론하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입니다.

지역사무소는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가령 '맞춤형 인권순회상담'의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권침해 상담프로그램의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무소의 내년사업 계획에는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사무소는 지역인권문제의 현안을 함께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II. 지역사무소 설치배경 및 현황

1. 파리원칙제정(1991) 및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권고(1993)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공포(2001. 5. 24)
3. 국가인권위원회 출범(2001. 11. 25)
4. 차별시정기구 일원화(2005. 6. 23)
5. 부산·광주지역사무소 개소(2005. 10. 11)

III.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기본방향

사회적 소외계층 및 소수자를 위한 현장·예방 중심 인권보호 활동 강화

● 중점사업

1. 인권 친화적 법령·정책개선
2.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3.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4. 상담 및 조사·구제활동 내실화
5.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강화
6. 대외협력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V.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업무 추진현황

● 지역사무소 주요 기능 및 업무 영역과 역할

1.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2.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3.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지원
5. 교정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권
5.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006 중점 추진 사항

1. 진정·상담 업무의 안정화 구축 및 권리구제의 접근성 제고
2.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강화
3. 대외협력(기관·단체) 기반 구축

1. 인권침해·차별 상담, 진정접수

- 가. 지역사무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나.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기초조사 및 구제 활동 수행, 위원회의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다. 그에 따라 지역 내에서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한 긴급 기초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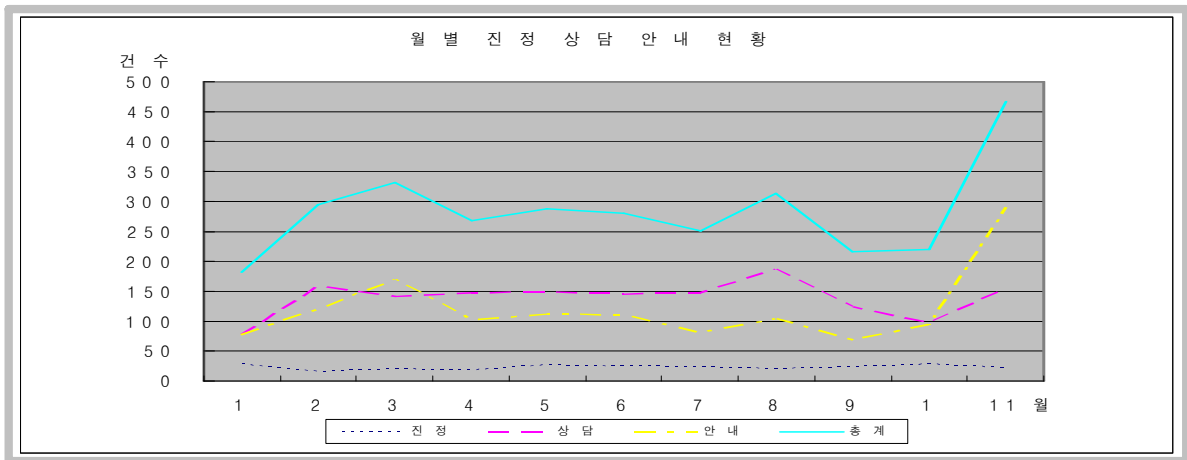
부산지역사무소 개소이후 진정·상담·안내·민원 전체통계

1) 기본현황

(통계산출기간 : 2006.1.1.~2006.11.30.)

(단위 : 건)

구분	진 정					상 담				안 내				총계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소계	방문		전화	소계	방문	전화	민원 회신	소계	
	대면	면접				대면	면접							
'05년	25	22	4	3	54	63	28	35	126	20	145	5	170	350
'06년	73	131	22	26	252	238	484	811	1,533	27	1229	77	1,333	3,118
총계	98	161	26	29	306	301	512	846	1,659	47	1,374	82	1,503	3,468



2) 지역사무소 개소에 따른 효과 분석

- 방문을 통한 진정·상담 증가에 따른 접근성 제고

* 진정인 및 내담자의 거주지가 부산으로 파악된 경우 대면 진정·상담 건수

구 분	대면 진정	대면 상담	합 계
개소전('04.10.12.~'05.10.11)	9	14	23
개소후('05.10.12.~'06.10.11)	83	128	211

☞ 지역사무소가 개소되면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인권상담 및 진정이 이루어지는 대면 진정·상담이 급증함.

☞ 전화나 우편 등에 비해 상담 및 진정의 밀도가 높은 대면 진정·상담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권리구제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면전진정 처리 소요일수 급감에 따른 신속성 제고

* 면전진정 처리 소요일수

구 분	평균소요일수	
	위원회 전체	부산지역사무소
개소전('05.1.1.~10.11.)	29.4일	-
개소후('06.1.1.~10.11.)	13.8일	9.6일

☞ 지역사무소가 개소되면서 구금·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에 대한 처리 소요일수가 급감함.

☞ 이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음.

3) 지역 내 방문 상담 추진

○ 울산지역 방문상담(06.4.27/ 울산광역시)

- 상담 13건(진정접수 3건 포함) 등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위원회 이미지 제고 효과
- 직장 내 성희롱, 장애아 교육권 침해 등 대면하여 상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지역민에게 적극 다가가 상담하여 구제방법을 안내함.

○ 경남지역(마산·창원) 방문 상담 및 초청강연·교육실시(06.9.20~9.22)

- 경남방문상담은 창원여성의전화와 마산여성장애인연대와 공동주관
- 현장(위원회 전용상담버스)상담과 영화상영, 최영애상임위원 초청 강연회, 인권교육실시

2.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1) 인권현장방문

○ 경찰서 유치장 수사시설 및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 부산지방청 연계경찰서, 부산진경찰서 : 유치장 및 수사시설

- 울산지방청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 유치장 및 수사시설
-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으로 표기 요청
- 사회복지시설 선아원(6.12)
 - 장애인시설(장애인 생활, 교육, 재활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 사회복지시설 파랑새어르신집 방문(6.27)
 - 아동보육시설 「파랑새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파랑새아이들」, 아동복지센터 「파랑새지역아동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파랑새어르신집」, 노인전문요양시설 「파랑새노인건강센터」의 운영실태 확인

2) 기초조사 및 방문·직권 조사 지원 및 교정시설 조사

- 구금시설 성희롱 사건 관련 부산교도소 방문조사(3.9~10) 지원
(부산성폭력상담소장 등 외부전문가 동행)
- 양산아람병원 실지조사 지원(1.27)
- 감만 홈플러스 건축공사 시위현장(2.24) 및 남부경찰서장 면담
- 대남병원 직권조사 지원(3.8~10)
- 원송정신병원 기초조사(6.27)
- 부산소년원 방문조사 지원(7.3~4)
- 교정시설 내 성추행사건 방문조사지원
- 울산구치소 수용자 자살사건 기초조사 실시 등

3.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이슈화 활동

가.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인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부산지역사무소는 지역에서 이슈화가 필요하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시민단체 설명회(3.8)

- 향후 5년간의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인 인권NAP의 이해를 높이고,

20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색을 위한 설명회 개최.

- 47개 단체, 65명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 실무책임자가 참석하여 인권NAP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

2)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실태조사(5.20~31)

-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주요 투표소에 대한 현장 실지점검을 실시.
- 부산진구(91개소), 울산 중구(56개소), 마산시(108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3) '사회복지와 인권' 토론회 개최(6.27)

- 지역 시민단체, 학계, 관련 기관, 시설 종사자 등 91개 기관(단체) 153명 참석. '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도 파악 및 중요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 그동안 서울중심의 외빈초청 행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심층연구와 대안마련을 위한 기초를 마련.

4.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

가. 부산지역사무소는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지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1) 인권교육의 확산

-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교육
 - 금곡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 대상 인권교육(2.3)
 - 울산청소년기관협의회 소속 단체 청소년지도자 교육(7.4)
 - 청소년자유학교 '반' 소속 중·고등학생 인권교육(6.10)
-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 철도공안사무소 직원 교육(6.9. 직원 40명)
 - 소년분류심사원 직원 교육(6.28. 직원 25명)
 - 경찰기동대 직원 교육
 - 경찰청 인권담당자 인권교육실시(9.5 경찰청)

2) 인권홍보 강화

-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영화 상영 및 전시
 - 인권영화 <여섯개의 시선>, <별별이야기> 상영 4회(4.30 메이데이 문화제 시 서면 지하철 문화 공연장 등)
 - 인권포스터 전시회 2회(5.7. 116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마라톤대회 홍보 부스운영 등)
-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영상공모전 진행
 - 지역사회의 인권과 차별을 주제로 12분 분량의 영상작품.
 - 사회적 약자(빈민,노인,여성,장애인,성적소수자,외국인노동자 등) 들의 삶과 애환, 희망을 담은 영상. 10월 18일 시상 및 사례 발표회. 당선작은 CD로 제작하여 인권 교육 자료로 활용.
- 전광판(시청) 및 단체 소식지 홍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3.20~4.11/1일 20회 홍보)
 - 인권상담전화 1331(4.18~5.20/ 1일 20회 홍보)
 - 위원회 권고사례 홍보(민주공원, 참여연대 소식지 등)(11회)
- 단체, 개인 등 400여명 메일링 구축
 - 뉴스레터 발송(주1회)

5. 대외협력 기능 강화

가. 지역 사회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지닌 인권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나. 부산지역사무소는 이들 단체와의 간담회, 각종 행사참석 및 현안 청취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음.

1) 인권단체와 협력관계 강화

- 부산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위원과의 간담회(2월. 부산 성폭력 상담소장의 20명 참석)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설명회 개최(3월. 47개 단체 65명 참석)
- 부산지역 여성단체 간담회 개최(4월. 부산여성회 등 20명 참석)
- 울산 방문상담 및 인권단체 상담업무담당자 간담회<4월. 13명 상담, 10개 단체 12명 참석)

22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1월. 변호사, 인권단체 등 25명 참석)
-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4월. 선관위, 장애인단체 등 40명 참석)
- 울산 태연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간담회(5월. 운영위원 11명 참석)
- 기관·단체 행사 참석<부산시민운동연대 신년하례회, 장애인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발족식 등 30여회)

2) 후쿠오카현 인권연구소 지역사무소 방문

- 후쿠오카현인권연구소 지역사무소 방문(부소장외 33명)
 -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 주요기능에 대한 사전 조사 목적.

3) 「배움터」 시설 시민사회단체 무료 개방

- 부산지역사무소는 사무소내의 '배움터'를 무료로 개방,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종 학술행사,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여론형성과 인권운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 배움터에는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영화상영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행사 공간이 여의치 않은 인권·시민단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부산 동화 읽는 어른모임, 부산교육대 학생·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인권영화 상영, 주거복지연대 교육 등 배움터 대여 25회.

V. 현단계 부산지역사무소의 과제 및 역할

1. 상담분야

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진정·상담활동 강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지역사무소의 주된 관심 영역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진정·상담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1) 인권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권리구제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 순회상담 실시 및 인권현장 상담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

2) 인권취약계층에 적합한 상담기법 개발

구금시설, 보호시설 등의 시설수용자,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상담이 각각의 대상에 맞게 진행되도록 적합한 상담기법이 필요함.

3) 인권취약계층 관련 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관련 단체와 일상적, 사업적 협력 강화와 소통의 활성화로 인권보호와 증진의 실질적 내용과 방법이 상담·진정에 발현되어야함.

나. 인권상담 및 진정의 실효성 제고

인권상담 및 진정의 활성화와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개별적 권리구제는 물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안 모색에 기여함.

1) 인권상담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향상

지속적인 홍보와 용이한 접근 방법의 개발로 인권상담의 활성화와 편의성을 도모하고, 고객 중심의 친절서비스 실현으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2) 상담 및 진정 내용의 분석과 해결과제 연구

상담 및 진정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과제의 제시와 지역의 인권현안 발굴 및 해결에 노력함.

2. 조사분야

가.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개별 진정사건의 조사를 통한 사후적인 구제활동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임. 아울러 지역사무소의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할 때 지역사무소가 사후 권리구제에 얽매이기 보다는 지역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기능을 강화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지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여겨짐.

1) 방문조사 기능 부여

2006.9.1부터 거리적 접근성, 면전진정과 사건조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효율성을 들어 관할지역내 교도소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지역사무소에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무소의 한정된 인력과 개별 진정사건을 통한 인권개선 효과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개별 진정사건을 통해 지역내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사무소가 한정된 인력으로 지역내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무소에 방문조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관할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영국 교도소 조사기구¹³⁾의 경우 정기적으로 교도소 전반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전반의 인권침해·차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영국 교도소 조사기구의 사례는 향후 지역사무소의 역할에 좋은 본보기가 되며, 우리의 경우에는 본부 조사관 1~2명과 지역내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진정제기 자체가 어려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권고사항 이행실태 점검기능 강화

권고사항 이행실태 점검기능은 위원회의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자 지역사무소의 주요기능 중 하나이지만 지역사무소가 개소이후 지난 1년간 사무소의 안정화에 주력한 나머지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음. 그러나 200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의 수립을 정부측에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NAP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바 앞으로 지역사무소의 권고사항 이행실태 점검이 보다 중요하게 기능해야 할 것임. 인권NAP 및 각종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요구되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3)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강화

신속한 권리구제는 지역사무소 설치의 주요배경으로 지역사무소가 실효성있는 인권옹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가 발생하거나

13) 영국 교도소 조사기구(HM Inspectorate of Prisons)는 1990년대 영국교도소 폭동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교도소내 수용환경, 처우전반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외부통제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방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사후점검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비조사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시설전반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본조사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침해차별의 혐의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진정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 파악, 긴급한 현장상황에 대한 조치, 인권침해 상황의 해소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아울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법 제48조에 정한 긴급구제조치 권고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피해자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나. 지역내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지역사무소가 지역내 인권증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진정사건의 해결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나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 지역내 인권현안을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포섭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 지역내 인권과제 발굴

지역사무소가 능동적으로 지역내 인권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지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지역민들에게 지역사무소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임. 지역사무소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인권문제에 포섭되지 않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에 기초한 인권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정책개선 기능을 담당하고 하는 인권정책본부에 지역내 인권과제를 발굴하여 전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지역내 인권상황을 알리고 더 나아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요청도 병행해야 할 것임.

3. 교육분야

가.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확산

1) 인권교육 실태조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 필요성을 평가하고, 인권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역량 강화 방안등을 모색하고자 함.

2) 사이버배움터 활용 영역 확대

공공기관 종사자 및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인권배움터』가 마련되었음. 배움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직접 교육현장을 모니터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인권교육 추진체계 기반 마련

- 1) 인권교육 포럼(교육네트워크) 구성
- 2)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 확대

전국단위 '02년 : 43개 대학 63개 강좌, '03년 64개대학 112개 강좌가 개설되었으나 부산, 울산, 경남지역 내 대학은 부산지역사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다. 지역내 인권교육 역량 구축

- 1) 인권교육 전문강사단 구성

지역내 인권관련전문가(교수, 변호사, 단체활동가, 기관 등)을 중심으로 인권교육 전문강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인권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2) 교사 인권교육 역량 강화(교원인권연수과정 프로그램)

교사의 인권지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교육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3) 공공기관 인권교육

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코자 함.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수 능력을 배양하고자 공공기관 종사자중 인권교육 강사단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4) 시민 인권교육

기업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관행이 생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가로막고 있어 차별문제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지역 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차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고자 함

4. 홍보분야

가. 지역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홍보 확대

- 1) 인권영상제 정례화(공모사업)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빈민, 여성, 노동, 장애인, 노인, 성적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등)들의 삶과 애환, 그 속에서 찾는 희망을 담아보고자 함.

- 2) 전시 및 영화상영

일상적 행사 과정에서 포스터 전시 및 영화상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기대

3) 기획방송(언론사) 확대 :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 기획 방송(년2회)

나. 위원회 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민들의 접근성 제고

1) 언론 매체 홍보 확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 시키고,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기관·단체 소식지 홍보

3) 홍보 포스터, 활동 브로슈어 제작 배포

다. 홍보매체 수단 발굴 및 확보

1) 지역사무소 홈페이지 운영

2) 메일링 구축 및 발송

5. 대외협력분야

가. 인권관련단체·기관과의 협력틀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1) 기관과의 인권정책 협력체계 구축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 및 적극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지역사무소 방문 프로그램(인권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 경찰, 시설종사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영화관람,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 기대

3) NAP의 인권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지자체와의 정례협의 활성화

인권취약계층의 실태 파악, 분야별 전문가(자문위원회 활용)로 지자체에서의 실현방안 모색, 지자체와의 정례 협의 틀 구축 등

나. 지역의 다양한 인권현안을 논의하여 상호협력방안 모색

1) 국제교류 추진

일본 인권관련단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단체(기구)와 상호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기반을 구축, 국내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

2) 정례 지역인권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지역내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더불어 분산되어 있는 인권관련 전문가를 발굴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지역인권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인권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다. 지역내 인권역량의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

1) 인권포럼 구성 운영

지역사무소, 지역인권단체, 전문가(지역연구소, 학계 등)와 공동으로 「인권포럼」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인권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함.

2) 지역사무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역사무소의 운영과 참여 확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

라.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1) 시민인권명예조사관 운영

인권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인권조사관을 구성, 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성희롱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2) 인권주간 행사 정례 추진

12.10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재조명을 통해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의 개소와 역할에 대한 홍보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토론회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교육권 확대 실현을 위한 현황과 과제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토론1. 최종건 (장학사,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권 확대 실현을 위한 현황과 과제

-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

최종건
(울산광역시 교육청)

I. 서 론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교육권의 범위를 교육의 핵심요소인 교사와 학생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육권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인권 침해)에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된 학생들에 의한 '교사의 교육권' 침해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I 현 황

1. 학생들의 인권 침해 현황(체벌 및 강제이발 등을 중심으로)

◆ 관련 법령

- 교육개혁위원회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계법령에 반영할 것을 권고(97.6.2)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정(97.12.13)
학생의 징계권은 '학교의 장'에게 있으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정(98.3.1)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 교육부 및 울산교육청의 기본 방침 :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의 체벌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명시·시행토록 함

- ◆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행정지도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
 - 중등장학계획 제2006-3호(2006.3.14)
 - 생활지도부장회의(2006.3.14)
 - 공문 1회 발송(2006.8.28)
 - 두발지도시 체벌, 강제이발 금지
 - 공문 4회 발송
 - 생활지도부장회의 2차례(3.14, 6.30)
 - 교장회의 2차례(6.20, 8.28)
 - 초·중·고등학교 교감, 부장회의(9.25)
 -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학생들의 민원접수
 - 해당 학교 교감, 교장을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함

◆ 문제점

여러 차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목적의 학생지도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에 의하여 체벌이나 강제이발 등의 인권침해가 행하여지고 있음
교사들은 심각한 행위가 아니면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징계보다는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 및 교육관등으로 지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도리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2.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 현황

◆ 실태

조사 결과 학생들에 의하여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까지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으나 2005년부터는 중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고등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물리적인 힘 사용

- 폭언
- 수업중 무단 이탈
-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복종

◆ 문제점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의 사기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서 학교운영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특히 수업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일탈행위는 수업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서 다수의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III. 방 안

교권이나 학생의 인권보호 기준에 대한 견해에는 교육공동체간의 시각차가 크며 학생·교사·학부모간의 해법상의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인권이 심히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교권이 존중되기를 기대하듯이 학생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전공교과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교수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수업시간 중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폭언, 무단 이탈, 잦은 불응 등이 그 사례이다. 전공교과에 대한 지식과 교수방법 개선을 통하여 수업의 질을 높임으로서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방법 또한 교사들이 신장시켜야 할 과제이다.

수업과 생활지도를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은 수업을 잘한다고 하여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기 힘들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행동특성 등을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세와 지도방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시교육청에서는 울산교육연수원, 교육부 및 교육청 인정 연수원을 통하여 교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
 - 상담활동
 - 단위학교에 전문상담 인력 배치
 - 교사들에 대한 상담연수 실시
 -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한 상담
 - 대안학교 운영(두남학교)
 - 학교사회통합과정 : 고등학생, 4기 160명
 - 심성계발과정 : 중학생, 12기 400명

◆ 학생생활규정의 보완 및 철저한 준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학교 폭력외의 비행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보다 상세화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규정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생활지도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을 징계위주로 선도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해 3~4만명이 징계를 받고, 7~8만명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사회에 방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토론회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토론2. 김옥진 (회장, 울산장애인부모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

김옥진
(울산장애인부모회)

1. 장애이해교육

몇일 전 옛날 병영의 같은 아파트에 살던 장애아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6년 전 하늘나라로 보낸 딸 아이가 사무치게 보고싶어 뼈가 아프다고 했다.

뼈가 아프도록 사무치는 게 어느정도 일까? 잠시 감이 오지 않아 멍했었다.

살아 있었더라면 20살의 예쁜 숙녀가 되어있을 아이였다.

당시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었지만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경증의 아이여서 완전통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엔 특수교육보조원이 없었고, 지원체계가 없었기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완전 방치를 의미한다.

특히 비장애 친구들에 대한 장애이해교육은 전무하다 보니 왕따나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매일 같이 아이의 몸에는 모래투성이였고 엄마가 복도인생이 되어 있었지만 아이는 아차하는 순간에 멍이 들어 있었다.

또한 담임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 특수학급으로 옮겼는데 아이를 맡은 연세드신 선생님은 아무런 의지도 없었고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었다. 잠시 진급을 위한 머무름이었고, 심지어 바깥외출을 할 때는 밖으로 자물쇠를 잠그는 일들이 일어났고, 아이의 인권은 짓밟개지고 있었다.

그래서 고민하다 주소를 불법으로 이전해서, 경증의 아이들이 많고 나름대로 직업교육을 한다는 경주의 특수학교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 힘들었던 아이가 견디다못해 12층에서 뛰어내려 하늘나라로 갔다.

그런데 비보를 듣고 온 장애아 엄마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더이상 차별받지 않는 곳으로 잘 갔다라는 이야기에 나는 심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아이 엄마는 며칠 전 고백에서 그때는 차마 울수조차 없었노라고 했다. 둘째녀석도 자폐1급의 장애를 가졌기에 잠시도 엄마의 시선과 손길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는 두 아이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어 죽이고 싶다는 그리고 죽고 싶다는 갈등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고 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 마음놓고 우는 것도 죄책감이 되어 그럴 수 없었노라고 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무치게 그리워 요즘은 뼈가 아프다고 했다.

우리아이 역시 경증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이나 학습에는 그다지 앞서지는 못하지만 문제는 없다. 그런데 지난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행이었던 상처들, 이유 없이 재수없다고 칼로 베어져 오는 교복들, 학교에 찾아가서 호소해 봐도 별반 소용이 없었다. 결국은 참다못해 학교장의 각서를 받는 소동까지 벌리고 난 뒤에 진정되는가 싶었지만 아이의 상태는 더욱 더 나빠져 있었다. 완전고립이었다. 선생님들은 근본적인 해결로 장애이해교육(인권교육)으로 사람의 소중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또래도우미를 만들어 융화시키기 보다는 아이를 아무도 건드리지도 말고 주위에 가지도 말것을 엄명으로 내리고, 아이는 한 달이 지나도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끔찍한 기억이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힘이든다.

그 시기에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의 실태조사를 해 보았더니 완전통합되어 있는 8명의 아이중에 두명의 여자아이는 성추행에 시달렸고 똑같이 학교폭력이나 왕따에 시달리고 모두가 점심시간에 잔반을 지속적으로 먹는 상황이었다.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면 전학을 강요받고 각서를 오히려 쓰게했고 심지어 한 아이는 6개월 사이에 갈비뼈가 3번이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학교와 가해학생 학부모 어느누구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는 교장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앞에서 너도나도 다 때리는데 재수없어 자기 아이가 걸렸노라고 했다. 그래서 교육청을 찾아가서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했지만 누가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교육청과 학교는 모른다고 했다.

처음 아이의 장애진단을 받고 죽을 만큼 몇년동안 온갖 노력을 하고나서 학교에 보낼

려고 하면 30% 정도는 학교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고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에 장애부모들과 함께 교육주체들은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갖추라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의 부모 50명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장관이 올해 7월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병합심리를 하겠다 약속했으나 아직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와 더불어 시행되어야 하는 장애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려는 인식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또 힘이 든다.

모든 학교가 교육청 지침으로 학교폭력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대책위의 역할을 살펴보면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나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해학생을 벌을 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게 고작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는 굳이 대책위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진다.

누군가는 꼭 해야할 일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장애부모들이 나서서 인식개선센터 개소를 하고 강사양성에 나섰다.

지난 10월부터 모두 50명이 시작했으나 중도탈락하고, 기초,심화과정을 마친 18명의 부모에게 수료증을 주었다.

앞으로 약 3개월에 걸쳐서 모든 토론과 강의안을 만들고 시연회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는 강사로 본격 활동할 계획에 있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년 2회이상 이해교육을 하기로 되어있지만 예산이 편성된 학교는 전무하고 또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 학교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여 차이와 다름을 넘어 하나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작년 말 경남 함안에서 혼자 살아가던 중증장애인이 방안에서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잠을 자던 중에 수도파이프가 터졌고 혼자서 몸을 못 가누는 중증장애인이 방안에서 그대로 처참하게 얼어죽은 사건이 있는 후에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인간답게 살 권리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자립생활의 기본이 되기도 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사회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터무니 없는 예산과 근거 없는 사업방침으로 또다시 중증장애인들이 기만하고 있고 지방정부 또한 상위법 운운하며 예전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 장애유형과 연령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보장되어지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얼마전 희망한국21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앞으로 1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장애인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설에 투자될 예산은 약 3천억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퍼 부으면서 정책을 내 놓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무어라 설명할 것인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시설비리와 온갖 탈법 불법사례를 차제하고라도 최근의 장애인운동의 패러다임이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운동임을 정부는 진정 모르고 있는가?

내년 활동보조인 사업의 국고는 287억에 불과하며 지방비 모두 합해서 400억정도의 예산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200%에 국한시키고 그 시간또한 월 40시간으로 제한해 놓았다. 여전히 그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올해 4월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이의 장애가 심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당하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던 아이가 학교에서도 내쫓김을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시청의 도움을 받아 생활시설에 보내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다동인 아이였다.

그러나 아이를 보내놓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엄마가 한 달 뒤에 아이를 보러 시설에 가 보았더니 아이의 몸골이 말이 아니었고 엄마도 알아보지 못한채 약에 취해서 살이 다 빠져 있는 모습에 엄마는 충격을 받고 시설에 거세게 항의를 하고 아이를 데려나와서 시청에 가서 보여 주었더니 한달 사이에 이렇게 변한 것에 직원들도 놀랐다고 했다.

지난 4~5년 동안 신고 미신고 시설을 찾아다니며 시설생활인 인권문제를 고민하는 한 활동가로 부터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감금과 폭행,성폭력과 비인간적인 삶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고, 시설 자체적으로 자립생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에서 그룹홈으로 그룹홈에서 자립홈으로 옮겨가며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비슷한 형태의 주거를 지원하는 곳도 있었다.

전자는 당연히 없어야할 시설이며 후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이 전자처럼 감금과 폭행은 없다 하더라도, 그저 단순수용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단체 t v시청이 유일한 하루일과인 경우, 외출은 1년에 한두번 장애인 날인 경우, 365일 정해진 일과와 똑같은 식단 중국에는 종신수용소처럼 평생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시설이라는 점이다.

버스타는 연습을 하고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의사표현 훈련을 위해 20년을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시설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사육되어 지는 것이다.

한 특수교사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무용지물을 이야기한다.

12년 동안 죽어라 교육시켜 놓았던 아이가 어느날 시설 견학을 갔는데 창살너머에 동공이 멍한채 갖혀 있는 모습에 심한 충격을 받아 그 길로 전환교육을 공부하기 위해 호주로 떠났다고 했다.

경증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는 시설에서 각종 노동에 동원되고도 공동체생활이라는 이유로 임금지급은 없다. 중증 정신지체인의 경우는 관리통솔을 위해 방에 감금되거나 시설운영자들은 물론이요 시설생활인들안에서도 폭력의 대상이 되곤 한다.

평생 이런 일상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사회복지 서비스일까?

우리는 복지부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단순수용 형태의 시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설이라는 구조자체가 가진 폐쇄성과 반인권성을 고려한다면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 최소한 그룹홈 형태의 지역사회를 기반 한 주거시스템 및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더 많은 장애인을 수용하고 싶어 한다. 그것도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인권, 그들의 꿈과 희망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시설보다는 그룹홈을 자립생활을 지원하라는 외침은 들리지 않나보다

집안형편이 어려워져서, 비장애 형제를 생각해서, 혹은 부모인 내가 늙어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이건 장애자녀를 가진 가족들은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하게 된다. 스무살 이후에 아무곳에도 갈곳이 없어 꿈쩍없이 집안에 갇혀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모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지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바라고 있다.

직업을 갖고 활동보조를 받고 장애연금을 받으며 시설이 아닌 자립홈에서 사는 것 그런 삶을 염원하고 있다.

한 장애인이 시설에서 어렵게 자립홈을 거쳐 자립생활을 하는데 밖에서 살아보니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힘들다라고 했다. 시설에 있으면 복지사가 다 해주는데 여기선 모두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시설로 다시 가고 싶으냐고 했더니 힘차게 고개를 저었다.

안가요 절대 안가요

그의 단호한 한 마디가 이제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므로.....

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토론회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울산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토론3. 정성학 (수사1계장, 울산지방경찰청)

울산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울산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경정 정성학)

I. 시민권익을 확고히 보장하는 '인권경찰' 실현

1. 인권을 최고가치로 하는 직무풍토 정착

- ◆ 여성·아동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활용
 - 여경을 전담조사관으로 지정(17명) ⇒ 여경 조사원칙 준수
 - 성폭력피해 아동·여성 진술녹화실 운영(6개소)
 -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한 범죄피해자 체계적 지원(1.25 개소)
 - ※ 운영 실적 (06. 1. 25 ~ 10. 31) : 상담 1'068, 진료 233, 증거채취 70, 진술녹화 16, 피해조서 99건 등 총 1,486건 처리
-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실무 매뉴얼 배부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작성·배부(120권)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활동 전개

- ◆ 학교폭력 예방·선도 및 집중단속
 - 자진신고 학생에 대한 선처·선도, 피해학생 인권보호 활동
 - ※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39건 접수, 폭력서클 2개(45명) 해체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홍보 실시
 - ※ 간담회 5회(154명), 특강 28개교(20,977명)

-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9. 1 ~ 10. 31) 운영
 - ※ 피해신고 접수 30건, 가해학생 90명 입건
- ◆ 인권침해형 성매매 근절을 위한 테마별 기획 단속 실시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등 테마 선정, 기획단속 적극 추진
 - ※ '05년 5회(256명), '06년 10월말 현재 3회(239명) 테마단속
 - 성매매피해여성 NGO 연계, 보호 조치 (48건 52명)

3. 수사과정에 불구속 수사원칙 확고히 정착

- ◆ 영장신청전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강제처분 남용 방지
 -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및 강제처분의 객관성 확보
 - 사건관련 과장, 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구속영장신청의 적정성 심의
 - ※ '05년 기각율 20.8%, '06. 10월말 기각율 18.8%로 감소추세
 - 내부전산망(CIMS)을 통한 영장신청·기각 상시 관리
 - ◆ 긴급체포 사전 허가사후 승인제 실시로 임의수사 원칙 준수
 - 긴급체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과장의 허가를 받아 긴급체포
 - 자진출석 등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 하지 않음
 - ※ '03년 1,884건 → '04년 1,508건, → '05년 904건 → 06.10월말 505건
 - ◆ 임의동행에 대한 절차 준수
 - 임의동행 요구시 동행거부권 및 퇴거권을 고지
 - ⇒ 임의동행 동의서 제출받아 기록 편철, 송치
 - ◆ 사건통지 및 관리체계 확립으로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 수사상황의 실시간 통지 및 「자기사건 열람시스템」 활용
- ▶ 사건담당자 수사상황 입력 → SMS 문자메시지 / E-mail 자동 통지
 - ▶ 사이버청에 「내사건 검색」 코너 마련(1일 1회 업데이트), 궁금증 해소

※ 대상건수(62,019건)중 통지를 원하는 11,728건 통지(18.9%)

- ◆ '수사활동 평가제도' 개선, 무리한 영장신청 방지
 - 수사경과제 시행과 더불어 「수사팀별 책임수사체제」로 전환된 후 불구속 수사원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구속 가점 폐지)
 - 내부전산망(CIMS)를 통한 수사요원 직무평가로 선의경쟁 유도

II. 고객 만족 중심의 인권보호 실천

1.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대책 지속 추진

- ◆ 피해자 인권보호
 - 이동식 피해자조사실 운영(살인, 강도, 성폭력 등 32건)
 - 승합차를 개조하여 조사실로 마련, 출장 조사 편의제공
 - 화상 대질조사실 운영(성폭력 등 20건)
 - 강력범죄 및 신원 비공개가 요구되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간 비대면 대질 조사, 피해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보복위협 등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활용
 - 피해자서포터 활동 강화(총 123건)
 -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병원후송, 피해품회수, 법률상담을 할수 있는 수사팀장, 사무소장(지구대), 여경(15명)으로 구성(총 122명)
- ◆ 피의자 인권보호
 - 원격 화상조사제 운영(총 3건)
 - 화상조사를 통하여 원격지에서 검거된 수배자 조기 석방
 - 수사일지 작성(총 199건)
 -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살인·강도·강간(성폭력) 사건 피조사자에 대한 신병 확보때부터 송차·석방때까지 각종 인권보장 절차 및 수사진행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 기재
 - 자백피의자 면담제 시행

- 구속영장 신청사건중 자백이나 정황증거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신청전에 면담을 통해 부당한 자백 여부 확인

◆ 사회적 약자 보호

- 지정 수화통역사제도 운영
- '05. 6. 3, '지정수화통역사(5명)' 위촉 운영
 - ※ '05년 울주서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수사(85명 불구속 입건)
- 화면읽기프로그램 설치 시범운영 (중부서)
-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2. 현장(spot) 중심 인권강화 계획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의 시스템 구축 (System)

- 「피해자지원협의회(102명)」 및 「피해자서포터제(122명)」 확대 운영, ⇒ 의료·상담·법률 등 지원단체를 네트워크로 구축·활용
- NGO와 함께하는 현장 인권진단 실시, 유치장 현장체험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진단



※ 기간·장소 : '06. 7. 20 ~ 21, 지방청, 중남부서
 진단참석자 : 총 15명(시민단체대표 5, 장애인단체 대표 5, 경찰관 5)

- ◆ 시민참여 형 인권감시 체제 내실화 (Participation)
 - 지방청 시민인권보호단(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등 17명)의 역할 강화
 - 유치장, 조사사무실 등 법 집행 현장 모니터링 강화
 - 인권교육 강의 등 다각적인 참여방안 마련

- ◆ 경찰직무 현장의 인권실태 진단 (Observation)
 - 시민인권보호단, 인권수호위원회, 인권보호센터 합동 인권진단
- ◆ 내실있는 참여형 인권교육 실시 (Training)
 - 지방학교에 경찰인권과정 신설(2일 14시간, 3회 60명 실시)
 -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6회 6명)

- ◆ 호송수배자 Re-Search제 자체 발굴 시행 (06. 4. 28부터)
 - 기소중지자 호송과정상의 부조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백강요 또는 비인격적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 설문조사
 - 호송~석방(또는 송치)과정의 투명성 제고, 인권침해 요소 사전 차단효과
 - ※ '06. 10월말 현재 설문대상 98명중 95명 실시 (3명은 설문 응답 거부)

- ◆ 광역유치장 확대 운영('06. 6. 12) 및 유치장 환경개선
 - 중·동부 → 중부서 광역유치장, 남부·울주 → 남부서 광역유치장
 - ※ 2개관서 기준 예산 연 5억7,000만원 절감 효과 및 잉여 인력 15명은 민생 치안부서 배치로 현장활동 강화
 - 유치인 표준일과표 개선, 식탁 및 슬리퍼 제공, 유치실 바닥 온돌로 교체, 유치인 현황판 제거, 여성유치실 『에티켓 벨』 설치

- ◆ 구속송치 피의자 중식제공 방법 개선 ('06. 7. 24)

개 선 전	개 선 후
구속송치 피의자 중식을 유치장 관할서 에서 오전에 도시락 준비후 지급 ※ 벌금수배자 중식은 검찰청 구내식당 제공	구속송치 피의자 및 벌금수배자의 중식을 일괄 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제공 ※ 중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검찰청 예산으로 일괄 집행

Ⅲ. 수사환경 변화로 시민만족 경찰행정 구현

1. 피해자·피의자 등 진술과정 변호인 참여 확대 ('06. 7. 1)

- ◆ 피해자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보장 명문 및 허용 의무화
 - ◆ 변호인 참여 대상자 범위를 피의자외에 피내사자·참고인까지 확대
 - ◆ 변호인 선임시 조사일시 통보제도 및 협의제도의 명문화
 - ◆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
 -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변호인이 당해사건의 증거인멸, 은닉, 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를 사용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 변호인 참여실적 : '06. 10월말 현재 49건

2. 수사환경 개선으로 투명성 보장

- ◆ 진술녹화 중심으로 피의자 등 조사시스템 전면 개선
 - 全 경찰관서에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실」 설치·운영,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도입방안」

- ▶ 벽면·천장 등 흡음장치, 카메라, 디지털방식 녹화 등 기본모델 제시
- ▶ 06년한 지방청·경찰서 진술녹화실 완공 예정 (남부서는 '07년도 신축)

- 수사환경 개선을 위해 수사부서 리모델링 사업 동시 추진

3. 체계적 고객관리로 국민만족 경찰행정 구현

- ◆ 민원인 이의 제기에 대한 적극 대응
 - 수사과에 이의조사팀(경감 1, 경위 1) 신설 (06.7.10)
 - 이의 제기된 사건은 이의조사팀 직접 수사 또는 수사지휘

- ◆ 사건의 무분별한 이송 근절로 처리기간 단축
 - 관할권 있는 사건은 최초 접수관서 처리원칙(수사촉탁 활용)
 - 이송이 필요한 사건은 지방청 이송심의위원회 심의후 이송
 - ※ 관서간 이송사건수 61% 감소 ('05. 10월 5,586건 → '06. 10월 2,179건)

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토론회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인권침해 방지대책

토론4. 박영철 (사무국장,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침해 방지대책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I. 들어가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국가권력은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인권가해자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해온 부정한 권력의 횡포 앞에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확장해온 역사가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의 역사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인권을 옹호하는 수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경찰,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구를 보며 바야흐로 21세기는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인권가해자에서 인권옹호자로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기구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논하는 자리가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만 같아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이제 견제의 대상, 견인의 대상, 협력의 대상으로 놓고 지혜를 맞대고자 한다. 다만, 그들이 그동안 부당권력을 공권력으로 포장하여 자행했던 인권탄압과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만 진정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불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한다.

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방안

우선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예방적 권리구제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적 권리구제의 강화이다.

우선, 예방적 권리구제라하면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의 개념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권침해를 막아내는 방법이다.

또한 실제적 권리구제의 강화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구축되어 인권침해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2. 예방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을 종합해보면 여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인권위에 진정된 진정 사건>

유형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차별행위	법령과 제도 개선
건수(비율)	17,263건(79.9%)	2,639건(12.2%)	1,696건(7.9%)

이는 인권경찰, 인권검찰 등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기관의 노력을 부끄럽게 하는 결과이다.

지난 시절 인권침해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권력기관들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인권옹호자로서 자임하는 기관들이 잘못된 예방적 권리구제에 매달려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하고자하는 진정성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우선 인권경찰을 부르짖으며 인권옹호자로 적극적인 자기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경찰의 경우,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1004 PROJECT>를 수립하고 이의 시행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고 공언하며 나섰다. 그동안 대표적인 인권가해자로서 자신의 불명예를 버리고 이미지를 변신하기위한 의지의 표현이 그럴듯하다.

하지만 조직내부의 인권의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는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가지 예로 경찰은 <1004 PROJECT>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인권보호단

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인권보호단의 운영과 구성은 이런 당초 계획과는 무관하게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권경찰을 수식하는 허울뿐인 기구로 자리하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다른 예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남구청은 2006년 구민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삼산동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오히려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행정으로 국가기구의 인권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스쿨폴리스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는 교육청은 키즈케어시스템 도입, 학교급식 바코드 프로그램 실시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인권의식의 부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내놓은 각종 제도 및 정책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방적 인권구제를 위해서는 국가기구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시행이 그럴듯한 정책이 아닌 다른 기관들의 견제와 감시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한지를 세밀히 살펴보는 신중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기관내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이 정책적 선택이 아닌 법적, 제도적 강화를 통해 기본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인권정책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방적 인권침해 방지대책의 핵심적인 과제는 인권교육이다.

현재,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전면화 되어야 한다.

인권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에도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종 국가기관의 연수에 필수적으로 인권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옹호자임을 자임하는 검찰, 경찰 등 인권가해자로서의 전력이 있는 국가기관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단순히 인권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실천을 전제로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인권강사단 구성을 시급히 진행하여야 한다.

단순한 법교육, 인성교육으로 대치되어지는 현재의 인권교육 아래에서는 인권침해 방지대책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3. 실제적 권리구제의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이왕에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세밀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권리구제의 방도는 보통 법적구제장치를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경제적 보상이나 처벌을 구제받는 수단이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의 속성상 가해자의 힘과 권력 앞에 쉽게 법적구제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경우가 많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에 진정의 형태로 이를 구제받고자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수많은 진정사건중 실제로 구제조치를 취한 진정은 846건(4.1%)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권리구제에 대한 신속하고 세밀한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적 권리구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진정처리가 요구된다.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인권침해가 구제된다고 생각지 않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높아져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적강제력을 마냥 부여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4.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시민단체의 역할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옹호자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수행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 검찰의 역할을 감시하고 견인하기위한 역할이 요구된다.

- 권리구제의 실현을 위해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인권옹호자로서 자임하면서 생색내기와 반인권적 정책을 시행하는 관련기관의 인권침해방지대책을 감시하고 견인해야할 역할이 주어져 있다.

- 구제영역의 확장 -- 인권의제 제시, 개발, 요구 제도화압박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조차 지키기 않고 있는 국가기관에게서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마는 그래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인으로 소임을 다한다고 전제해도 인권침해는 여전히 벌어지게 된다. 왜냐면, 현재 우리사회가 구제해야할 인권침해의 영역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인권담론은 자유권적 인권론에 입각하여 논의되기 때문에 사회권적 영역 즉 다시 말해 생존권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책은 논의에서 제외되어있다.

또한 평화의 문제, 수많은 차별의 문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인권의제로 확대하고 제도화시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II. 맺는말

인권침해방지대책을 논하며 무엇이 인권침해인지 근본적인 물음이 앞선다.

국가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침해방지대책이란것이 거의 대부분 자유권적 인권론에 기반하여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자유권적 인권을 넘어 사회권적 인권 즉 다시 말해 먹고사는 생존권에 대한 권리의 요구로 높아져 있다.

향후 인권침해 방지대책은 바로 이들 사회권의 요구에 우리사회가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관련법안의 통과, 한미FTA 체결로 발생할 사회권의 후퇴, 가속화 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이제 인권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자처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본의 시장에 모든 질서를 맡기고 이에 반발하는 집단에 대해 경찰의 억제를 가하는 영국과 미국 등의 경찰국가의 전형을 답습하고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토론회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성차별의 현황과 과제

토론5. 김주영 (대표, 울산여성회)

성차별의 현황과 과제

김주영
(울산여성회)

양성평등이 현대사회의 대세라고들 한다. 아니 여성상위시대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제도적 법적으로 성평등한 내용들이 이전에 비해 많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만큼 성차별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가부장적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전히 각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남성중심의 대기업들이 많은 울산지역도 이러한 사례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울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성차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직장(여성고용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

2006년 고용평등센터 사례를 통해서 보면 각종 차별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협력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직에서 차별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여성의 일할 의욕과 능력에 대한 불신

여직원은 '직장의 꽃'이라는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에 대해서는 일

그자체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성적인 존재로서 규정하고 여자다움을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여성도 직장에서는 일할 의지와 의욕,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의 직장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 000시설 사무실에서 소장하고 여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소장은 여직원한테 “여자는 가슴이 풍부해야 좋고” ‘안기는 맛이 있어야 좋다’라는 등등의 언어적 성희롱으로 상담을 해왔다.

2. 남녀의 성의식의 차이

대부분 직장내의 여성문제가 그렇듯이 성희롱 역시 가해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간에는 그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이 성희롱에 대해 ‘친밀감의 표현’ ‘인간관계의 원활유’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여성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코 여성이 과민반응하기 때문이라거나 피해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성희롱으로 인해,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직장생활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히 폭력이다.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에도 가해자인 남성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술기운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등 동정적이고 허용의 폭이 상당히 넓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다’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는 여자’ ‘농담도 이해 못하는 속좁은 여자’라는 등의 반감과 비난은 물론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오히려 원인제공자로 치부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남녀의 성의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 00기업에서 상급자가 자기 책상서랍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의 그림(전라의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아 서랍문을 열 때와 닫을 때 그림을 항상 보고 이를 즐기는 사건이 발생하여 상담사례를 의뢰

☞ 회식을 하면서 직장상사가 여직원을 목을 조르는 행위가 발생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장난이라 여겼는데 너무 심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사의 이유인 즉 여자가 너무 잘난척하고 목소리 나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함

3. 직장내 폭언, 폭행

☞ 폭행과 일방적 해촉

중앙농협본점에 3년간 근무하다(1년계약직) 2006년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계약서 작성도 바쁘니까 이름하고 싸인 빨리빨리 해라는 식으로 무슨 내용인 줄도 모르고 진행했고, 공제상담원들은 정규직이 아니니까 누가 뭐라하면 다른 보험회사에 가면되지 라는 등 심심찮게 상담원들을 심적불안과 언제 쫓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제상담원을 하고 있다. 이에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가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해 이의를 제기하자 윗분들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를 해촉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 마트에 근무하는데 담당이 폭언을 일삼고 있다.

예를 들면 저 여자 처먹지 말라. 저 여자 짤라야 한다는 등 나한테 잘보이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갈아치운다고 한다.

☞ 00마트에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주임과 사이가 나빠 출근조례 할때마다 비아냥거리고 심하면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다. 주임의 온갖 비리를 저질러 오다가 안되면 폭언을 일삼고 있다. 상사분한테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주임이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다.

☞ 건설회사 사무실에 소장, 대리, 경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상 크게 이야기했다고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까지 하고 있다. 병원가서 진단 5주가 나왔다. 대리는 반성은 커녕 내 눈앞에 보이지 말고 나가라고 한다.

☞ 여조교 심각한 인권침해

병원상담실장을 맡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모대학에서 교수겸임자리를 주고 교수가 밀어주고 논문학위를 받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유대지 말고 한번만 도와달라 라고 해 도와주기로 했는데 한달뒤 모대학이 국가보조금을 받고있는 상태이고 조교하고 어떤 이야기도 없는 상태에서 매출 1억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교한테 매출 5천만원 하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조교한테 고향과 갖은 모욕적인 언사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 이제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한 상태

4. 모성보호 침해

☞ 모 초등학교 교무보조로 3년간 일하고 있는데 학교장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1년계약이 아니라 6개월로 계약을 하자고 한다. 고용평등법에도 나와 있듯이 산전산후 90일 휴가는 의무조항이고 육아휴직도 1년간 의무조항이다.

☞ 최근 대형병원에서 신규 입사 간호사들로부터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등의 서약서를 쓰게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5. 부당해고

☞ 모 가정보육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설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자진 퇴사로 인정하고 언제까지 나오지 말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시설장과의 계약체결은 했지만 보육시설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설장 이름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해고이다.

☞ 회사에서 바른말 잘하고 똑소리 난다고, 주위 동료들이 다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다. 회사 차장은 한사람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권고사직을 권유하면서 3~6개월 월급을 줄테니 그만두라고 한다.

6. 성차별

☞ 한 달간 훈련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수업테스트 하면서 시험에 떨어졌다. 떨어진 이유가 머리스타일이 마음에 안들고, 화장도 지워졌고, 나이도 많다는 게 이유였다.

☞ 청소 커피 접대 등 이유로 사표쓰기를 강요

현 회사의 사장이 저의 학벌과 경력을 높이 사 함께 일할 것과 장기 근속해 줄 것을 부탁해 입사하여 2개월 정도 근무했다. 그런데 1주일 전 팀장이 나가 달라는 말을 해왔다. 아이를 맡기고 출근 시간인 8시30분에 맞춰 나오고 있는데 더 일찍 나와서 청소나 커피 접대 업무를 하지 않고, 야근을 못하기 때문에 자질이 의심스럽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등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결혼하면 그만두는 게 관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그만두는 것이 관례이다. 물론 사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미리 말하고 사직을 해야 한다. 결혼한 지 몇 개월이 되었지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지금껏 다니고 있다. 그런데 타 부서 과장이 제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듣고 인사과 과장에게 알리고, 저와 친한 동료들 불러서 제 결혼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 지역 내 성폭력사건을 통해 본 과제

1. 학교 성폭력사건(성추행) 사례

2004년 밀양성폭력사건, 2005년 교사에 의한 학부모 성추행 사건, 2006년 교장에 의한 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사건 등 울산지역에서 해마다 학교성폭력사건이 일어나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대대적인 시민적 합의와 결의를 모으기 위해 학교성폭력추방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져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그간의 활동으로 성역으로 알려졌던 교육계 내에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교사에 의한 학부모 성추행사건이후 교사들이 학부모와 노래방 가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며, 성추행 교장 해임 이후에는 성추행을 한다고 소문이 난 교사들이 몸을 사리고 조심한다는 후문이 있음), 성추행교장을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해임)시킨 점, 이후에 일어난 유사한 학교성폭력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내에서 자체 징계위를 열어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몇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대책위가 교육청내에 있는 성희롱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이후에 각 학교에 예산을 내려 교사들의 성희롱예방교육, 학생들의 성교육을 하게 하였으며, 울산지역내 학교성폭력 실태조사를 강력히 실시하라고 요구하여 대책위에서 설문지 초안을 마련하여 현재 그 결과물이 12월에 나올 예정이며, 대책위 안에서는 학교성폭력예방 조례를 만들려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2.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사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울산지역에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와 상황대처 능력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성폭력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생인 정신지체 장애학생들 또한 곳곳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확한 날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가해자에 대해서는 표현방식은 다양해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시 그 휴유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안과 우울 분노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성폭력은 대부분 즉시 발견되기 보다는 시간이 흐른후 가족이나 특수학급 교사등 주변인에 의해 접수가 되고 지속적인 성폭력이 진행된 뒤 신고가 되는 현실이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8조 항거불능조항에 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피해를 당하

고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못하는 조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2중, 3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 정신지체3급인 김00은 20대 후반 여성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집에만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부모님이 집 가까이 있는 체육시설을 보냈다가 50대의 남성으로부터 맛있는 것을 사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모텔과 산으로 다니면서 성폭력을 당했다. 길보기는 멀쩡하지만 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처음 상담소에서 개입했을때는 전혀 성교육도 받은적이 없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여자는 이런걸 해 봐야 된다면 강제로 성폭력을 가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가해자는 대부분의 장애인성폭력가해자들의 수범인 화간으로 몰아가고 있다.

☞ 정신지체3급인 김00은 학생이다.

학교 선배가 휴대폰을 뺏아서 휴대폰을 받으려면 화장실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곳에서 어떤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상황판단이 되지 않기에 휴대폰 받으러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 정신지체1급인 이00씨는 30대이지만 여전히 갈곳이 없어 집에 있다가 가해자가 다수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건이 진행중이다.

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토론회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아플 권리도 없다

토론6.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울산노동자배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겐 아플 권리도 없다

안기호
(현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 현대자동차 원청 사용자가 직접 하청노조 탄압!

울산·아산공장 감시사찰 및 불법대체인력 투입의 실상!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불법감시사찰]

○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감시·사찰 기록 발견

2003년 기아자동차 금형공장, 2004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현대자동차 사측의 노동자 사찰이 잇달아 밝혀진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도 사측의 노동자 사찰을 기록한 보고서가 발견되어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 2005년 2월 4일경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에게 지급된 설 귀향비가, 유독 5공장 대서공영 소속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중인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지 않았다. 설 귀향비는 1인당 각 1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타 업체 소속인 경우 농성 조합원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었다.

- 대서공영 조합원들은 그동안 수차례 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설 귀향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대서공영 측은 “귀향비는 주고 싶은 사람만 주면 된다. 조합에 가입된 사람은 절대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 왔다.

- 2005년 4월 6일 중식시간 현자비정규노조 5공장 조합원 20여명은 “귀향비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대서공영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였으나, 대서공영 장○○ 이사는 “귀향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 120만원 어치를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 이에 조합원들은 서류로 보이는 종이 뭉치들을 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귀향비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장○○ 이사는 “귀향비는 줄 수 없고 그거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조합원들은 나중에 서류를 찾고 싶으면 공개적인 사과와 귀향비를 지급하라고 한 뒤 종이뭉치를 들고 나왔다.

- 그런데 들고 나온 서류뭉치를 확인한 조합원들은,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업체로 판명¹⁴⁾났던 대서공영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감시·사찰해 온 엄청난 량의 보고서들과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넘어 비정규직에 대하여 사실상 직접 사용자로서 역할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온갖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 평소 비정규노조 및 조합원들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숨기지 않아왔던 장○○ 이사는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하면 자신이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엄청난 자료들을 들고 나가는 데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⁵⁾ 다른 한편으로 일상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감시·사찰을 지속해 오다 보니 이러한 자료가 유출될 경우에 일어날 파장에 대해 위낙을 감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업체가 소속 비정규노조 조합원을 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동향까지 사찰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 정황상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제출된 보고서로 판단된다.

- 보고서에는 집회·출근투쟁 명단과 집회상황, 유인물 내용과 배포현황 등 노조활동은 물론 개인 사생활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시간대별 체크, 성향분석, 대화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 보고서는 이처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감시 사찰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조탈퇴공작 등 노조파괴를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14) 2004년 9월 22일 1차 불법파견 판정시 포함

15) 실제 장○○ 이사는 사건 직후 울산 동부경찰서에 조합원들을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다.

○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

또한 2004년 말 노동부로부터 불법과건 판정을 받은 바 있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마치 직접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개개인의 근로계약·근태·임금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별 노동자의 계속고용·계약해지 여부 또한 직접 지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배포, 비정규노조 설립 직후 조직적인 노조탈퇴 공작 총괄,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실 운영 및 대응논리 전파,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및 운영 총괄 등 비정규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과 대응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총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한편 노동부의 불법과건 현장조사 및 경찰조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협력지원팀 주관 아래 사내하청 전 업체를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갖거나 서류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과건 사실에 대한 은폐·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케 하는 흔적들도 발견되었다.

[매일노동뉴스 4월16일자 기사]

‘하청업체 경영, 비정규노조 대응 총괄’ 곳곳서 발견 하청노동자 계약해지도 직접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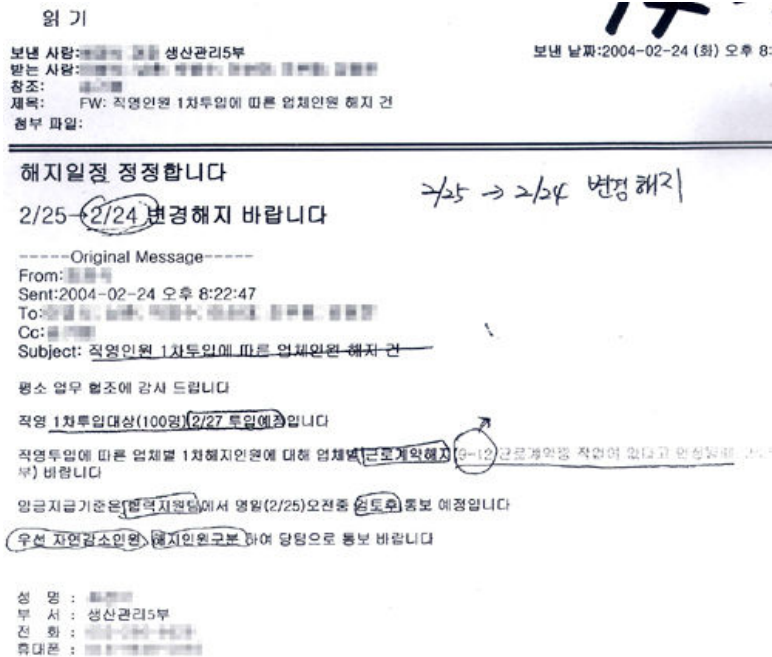
지난해 9월 불법과건 판정을 받을 당시 현대자동차가 계약해지 시 하청노동자의 배치 또는 계속 근로여부를 직접 지시한 점이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단의원 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태, 임금, 고용 등을 직접 총괄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지난해 9월2일 현대차 생산관리5부에서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협력지원시스템 근태 등록 건’에는 “매주 매월 근태등록하고 있는 것”을 “9월부터는 매일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31일자로 작성된 대서공영 궤로퍼부의 작업일보에는 업체 노동자들의 근태 상황이 세부적으로 정리돼 있다. 작업일보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평가 시 제출되

는 자료다. 작업일보 외에도 사내협력업체 평가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임금 및 상여금 대장, 총원 명부, 개별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증거자료가 나왔다.

현대자동차가 직영 인원 투입에 따른 하청노동자 계약해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인력운 용에도 깊숙이 관여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사진>도 있다.



지난해 2월24일자 현대자동차 생산관리5부가 하청업체에 보낸 메일을 보면 “직영 1차 투입대상 인원이 100명”이라며 “직영투입에 다른 업체별 1차 해지 인원에 대해 업체별 근로계약해지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노조 탈퇴 회유 문건에 현대차 팩스번호가

사내하청업체의 근태, 임금 등 경영에 개입한 것 외에도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대응에도 직접 나섰다는 정황이 단의원 실이 공개한 자료에서 여러군데 포착된다.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노조가 설립된 직후 7월 작성된 대서공영 개선활동 실적 및 계획에 ‘(노조)가입동기 파악 등과 같은 추진계획이 포함돼 있다. 겉으로는 개선활동이지만 속으로는 노조동향 파악 및 노조탈퇴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 단 의원 쪽 주장이다.

단 의원 쪽은 개선활동 계획서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쪽의 팩스번호가 기재돼 있고, ‘업

체명 : (주)대서공영 B반'이라는 표기가 개선활동 내용이 현대차에 보고되는 등 원청이

노조탈퇴 공작을 총괄했다고 분석했다.

불법과건과 관련해 노동부나 경찰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원청이 조직적으로 사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

역시 현대차 생산관리5부가 지난해 9월17일 5공장 운영팀에 보낸 이메일에는 '노조 불법과건 진정관련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하청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소집하고 있다. 노동부 현장조사를 앞둔 지난해 10월5일에는 현대차 협력지원팀에서 2003~2004년도 도급계약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 모임에 참가할 것을 도급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료도 있다.

협력지원팀 관계자는 "사내하청업체에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시인하면서도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현대자동차 생산관리5부 관계자는 15일 연락이 계속 되지 않았다.

감시·사찰 문건 들여다보니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수용소 생활' 방불

대화내용·사생활까지 시간대별 감시...노조 탈퇴 과정 낱알이 기록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작성된 150페이지 분량의 감시·사찰 문건에는 노조 활동가들의 동향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인 노조 탈퇴를 위한 과정까지 낱알이 기록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노조 탈퇴 과정에서는 친구와 친척, 가족을 동원했으며 개별 담당자까지 선정, 매일매일 치밀한 계획 속에 회유 작업을 해온 것으로 문서는 적고 있다.

사찰의 대상은 그동안 극심한 차별대우와 고용 불안을 겪다가 노조를 만든 현대차비정규노동자들과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다. 문건은 크게 △비투위 활동현황일지(03/06/30~01/07/07) △일일노사동향보고서(03/07/09~04/09/15) △일일노조동향보고서(05/01/05~05/04/01)로 나뉜다. <사진>

간(10분) 별다른 동향 없이 커피 자판기 앞 대화 나눔” 등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꼼꼼히 이들을 사찰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토론, 대화 내용까지 언급된 부분에서는 ‘도청’의 의심마저 갖게 한다.

동향보고서에는 “조○○, 박○○-중식시간에 배포된 유인물 ‘미특위 조직 발전 전망’에 관한 얘기를 함”, “활동가의 비가담자 접촉 없이 교육에 대한 얘기가 주된 대화였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인 사생활이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기가 찰 정도다. 문건에는 “김○○ (부산집 거주, 성당 봉사활동 중), 신○○(마산에서 아르바이트 중), 김○○(하동 집에서 소일), 박○○(운전면허 시험대비), 이○○(부안 집에서 집안일, 막사 작업 중)” 등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 밖에 “표리부동하며 주관 없이 행동함. 중도”, “기획주의자.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빠짐”, “항상 부정하기 위한 부정을 하고 말이 안 통함”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성향이 적힌 조합원 리스트 △대체인력 준비와 투입 상황 △정규직 활동가 감시 △65명의 명단이 담긴 ‘입사관리대상자’(블랙리스트)등이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프로메테우스 4월16일자 기사]

현대차, 노조원 사찰은 계속된다

울산공장 사내하청 업체, ‘일기형식’ 체계적 비정규직 사찰 (양명철/ 정청천 기자)

“박○○ 외 가입의사가 있는 작업자 4~5명 회유 및 설득작업”-2003년 7월9일

“석○○ - 주동성향에서 면담후 탈퇴의사”-2003년 6월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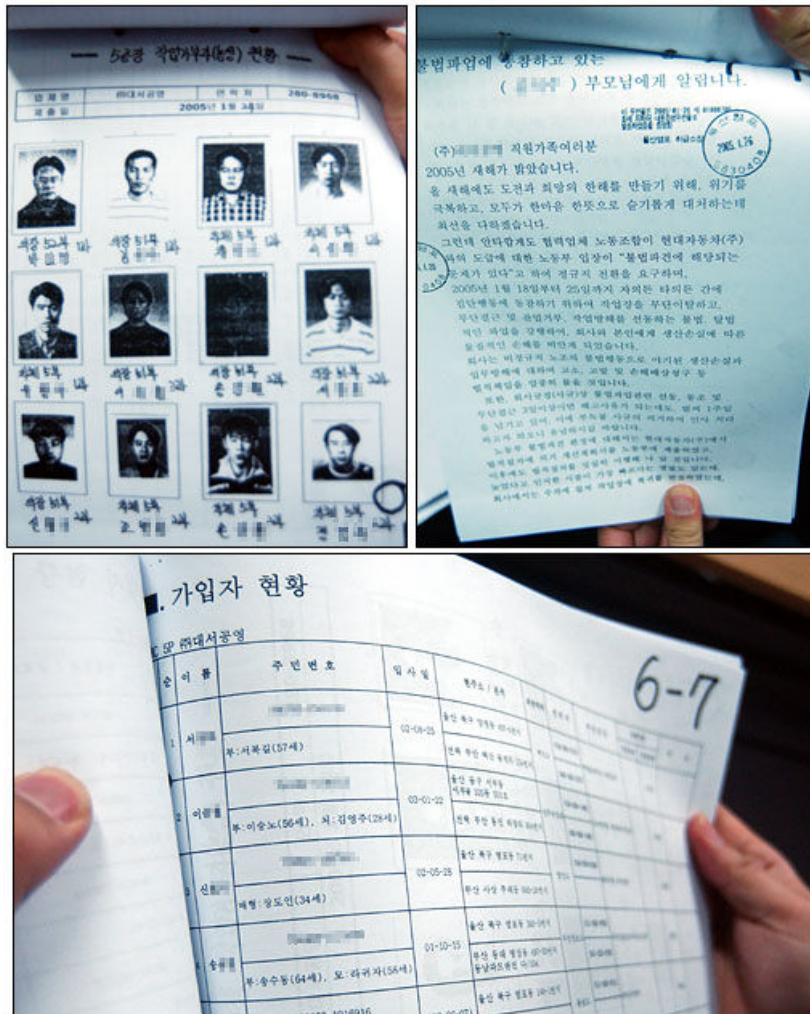
“김○○ -탈퇴(면담후) 활동안함. 활동이유 - APT 계약건설사 중도금 및 금전(임금) 부분에 혈안되어 동참”-2003년 7월1일

현대자동차의 노조원 사찰 시리즈는 어디까지?

2003년 기아차 금형공장, 2004년 기아차 화성공장·현대차 아산공장에 이어 현대자동차판 노조원 사찰이 올해에도 드러났다.

이번 사찰시리즈는 사내하청 업체가 소속 비정규노조원을 대상으로, 일부 정규직까지

도 포함시키고 있어, 현대자동차의 직접 연관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찰문건의
 결재 라인에는 담당→소장→업체장 으로 기재돼있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D업체에서 입수된 자료,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15일 공개된 울산 제5장 D업체 소속사업장의 비정규노조원 사찰 문건에는 이같은 세세한
 자료들이 일기형식으로 거의 매일의 상황이 기재돼 있다.

이번 문건은 크게 △비투위활동현황일지(2003.6.30~2003.7.7) △일일노사동향보고서
 (2003.7.9~2003.10.11) △일일노사동향보고서(2004.5.10~2004.9.15) △일일노조동향보고서
 (2005.1.5~2005.4.1) 등 만2년 동안의 기간동안 4가지로 분류된다.

현대차비정규노조의 비투위 활동에서부터 노조형성 이후의 과정 등 노조의 활동과 맞물
 려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노조결성 준비단계부터 활동했던 몇몇 조합원들의 경우에
 는 2003년 6월부터 지난 1일까지 거의 모든 기록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노조원부터 가족까지 노조탈퇴 회유 협박

100페이지 분량의 이번 사찰문건은 노조원 개인의 성향과약은 물론, 노조탈퇴와 그 상담과정 등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 그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2003년 7월11일 '실태과약 및 상담내용'에는 "가입자 김○○ - 동료 및 조장 설득 시도 - 직영 지인 활용 협조 구함", "신입사원 및 박○○ 등 비가담자 단속"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들을 이용한 노조활동 회유·협박도 잘 나타나고 있다.

사측은 지난 1월26일자 소인의 '불법과업에 동참하고 있는 (김○○) 부모님에게 알립니다'라는 우편물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작업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설득하고 도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또 "이러한 노력에도 복귀하지 않을시 해고가 불가피함을 참고하시고...", "또한, 불법과업관련 선동, 동조하는 직원 개개인 모두에게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밝힙니다." 등 협박성의 내용도 들어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감시사찰 실상]

울산공장에 앞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도 경비대 D반이라는 특수경비대를 통해 노조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통제를 하고 있었음이 지난해 드러났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경비대 D반은, 원하청 노조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현대 자본의 사설 폭력경비대였음이 밝혀졌다.



◀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간부의 출입을 폭력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경비대 D반



▲ 원하청 노조 간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아산공장 경비대



▲ 노동자들은 정문에서 모든 것을 검색당해야 했다. 워커화를 신은 무시무시한 특수경비대들로부터.

[현대자동차울산공장 불법대체인력투입의 실상]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노조 파업에 현대자동차(주) 측이 직접 1주일·2주일짜리 아르바이트·한시하청 수백명 투입하며 파업 분쇄 나서

◎ 임시출입증 ◎		◎ 임시출입증 ◎	
업 체 명	■■■■기업(주)	관리부서	의장2부
관리부서	의장2부	성 명	김■■■
성 명	김■■■	주민번호	8■■■■-1■■■■
주민번호	8■■■■-1■■■■	출입기간	2005.01.19-01.31
출입기간	2005.01.19-01.31	확 인	협력지원팀 출입담당
확 인	협력지원팀 출입담당	업 체 명	■■■■기업(주)
		관리부서	의장2부
		성 명	박■■■
		주민번호	8■■■■-1■■■■
		출입기간	2005.01.19-01.31
		확 인	협력지원팀 출입담당

1주일·2주일짜리 아르바이트·한시하청을 불법대체인력으로 투입!

현대 자본은 비정규직노조의 잔업거부투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불법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잔업거부투쟁이 지속되면서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위 사진은 잔업거부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현대 자본이 불법적으로 투입한 대체인력들의 임시 출입증이다.

임시 출입증에는 출입기간이 1월19일~1월31일로 선명하게 찍혀 있으며, 비정규직노조

의 잔업거부투쟁이 18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 자본이 잔업거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투입한 인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 출입증을 보면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1개월짜리 단기계약직'도 아니고 13일짜리 한시하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업체에서는 1주일짜리 한시하청을 대거 투입했다가 1주일이 다되어가자 1주일간 계약연장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원하청 자본은 1주일짜리, 2주일짜리 아르바이트·한시하청 수백명을 투입하며 잔업거부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렇고도 자동차가 제대로 생산되리라 믿고 있던 말인가!

관리부서도 원청부서, 확인도 원청 협력지원팀, 직인까지 원청 협력지원팀장!

임시 출입증 하나만 보아도 대체인력투입이 업체 차원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원청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난다.

출입증의 [관리부서]란에는 '의장2부'라고 찍혀있는데, '의장2부'란 2공장 직접조립라인 생산을 담당하는 원청 부서를 일컫는다. 또한 [확인]란에는 '협력지원팀 출입담당'이라 찍혀있는데, '협력지원팀'은 원청에서 하청 담당 노무관리 및 인사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이른바 '현대자동차 불법과건의 실무부서'이다. 게다가 출입증에는 "현대자동차 협력지원팀장"의 직인이 버젓이 찍혀있기까지 하다.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과건"도 모자라 또다시 1주일·2주일짜리 파리목숨 한시하청을 투입하며 불법과건을 확산하고 있던 말인가! 이것이 현대자동차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윤리경영'이란 말인가!

최남선 동지를 분신으로 몰아간 불법대체인력 투입!

"나의 희생으로 비정규노동자 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규직 동지들)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연대 좀 해달라"

비정규직노조 최남선 조합원이 현자노조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며 온몸으로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잔업거부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현대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한 불법대체인력이었다.

최남선 동지는 21일(금) 오후 6시 본관 앞 평화로운 집회장에서 자행된 경비대의 무자비한 폭력과 낭자한 동지들의 피를 보며 분노했고, 22일(토) 오전 6시 현장을 순회하며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고 잔업거부를 조직하려던 2공장 조합원들이 때로 몰려든 원청 관리자들에게 의해 무참하게 현장 밖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면서 또한번 격분, 끝내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며 '비정규직 스스로의 단결'과 '원하청 공동투쟁'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대체인력 투입실상]

불법파견 방관도 모자라 불법대체인력도 묵인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천안지방노동사무소를 규탄한다!
- 3월 7일부로 천안노동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1.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자 Global Top 5를 향해 고도성장을 질주하는 현대자동차(주)는 무려 1만 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여 올 해 만 해도 약 1조 7천645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둘 정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의 하수인인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사업주들은 [중간 착취]와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2. 이에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이하 지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포함하여 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2004년 5월 27일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동년 7월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9월 9일-10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1월 19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3.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사업주들은 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15일~1달 사이의 단기계약직을 대거 채용하여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끝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가리지 않고 채용하는 등 [불법파견]과 [불법대체인력]이 현장에서 넘쳐나고 있다. [불법대체인력], [아르바이트]가 만드는 '세계의 명차' 이것이 작금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현실이다.
4. 게다가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지회의 파업참가자 중 현재까지 해고 3명 정직 8명 등 총 48명에 대하여 무차별 대량징계를 남발하고 있으며 노조 탈퇴와 파업참가를 막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모 협력업체 관리자는 부당징계에 항의하고자 농성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탄압이 날로 극악해지고 있다. 이에 지회는 3월 7일자로 해당 관리자를 천안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5. 또한 지회는 2004년 12월 23일, 2005년 1월 18일 2차례에 걸쳐 사내협력업체 사업주

들을 관련법(노조법 42조: 쟁의행위기간중 대체인력투입금지)조항에 의거하여 천안지방 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다.

6. 그러나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불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 반 노동자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7.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쟁의행위 당시 지회의 직무대행이 “중노위 해고 확정자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쟁의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문제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8. 더욱이 백번 양보해서 지회의 직무대행이 조합원 자격에 법적인 시비가 있더라도 지회는 독립적인 노조가 아니라 단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는 금속노조 지도, 지침(규약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9. 그러나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이러한 지회와 지역 노동사회단체의 주장에는 귀를 틀어막고 오로지 사내협력업체 사업주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등 현대자본을 비호하고 있다.

10. 따라서 지회는 3월 7일부로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불법 대체인력 투입 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만일 노동부가 끝까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징계와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응징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8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대체인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이르기 까지 경과와 의미

□ 경과

- 12. 23: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노조법 위반으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1차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 대흥, 진성, 신흥기업 대표)
 - 2005. 1. 3: 의장부 5개 업체 조합원 잔업거부 및 부분과업 등 쟁의행위 돌입
 - 1. 13: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접수
 - 1. 19: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노조법 위반으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2차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 진성, 유성, 신흥기업 대표)
 - 2. 21: 금속노조 충남지부 운영위원 노동부 항의방문 및 면담
 - 2. 22: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원하청 노조 공동 노동부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
 - 2. 28: 민주노총 충남본부 본부장의 노동부 항의방문
 - 3. 7: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원하청 노조 노동부 항의집회 및 면담
사내하청지회 노동부 앞 천막농성 돌입
 - 3.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체인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 진행
 - 3. 14: 지회에서 노동부 판정을 지노위 판정이후로 연기 요청
 - 4.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체인력투입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판정
- 천안지방노동사무소의 친자본적 행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회에서는 동 건이 지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사건처리를 지노위 판정일 까지로 연기 요청함.
- 노동부 집무 규정에 동 건이 지노위에 계류되어 있을 경우, 노동부는 지노위 결정

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노위에서 불법대체인력으로 판명이 난 만큼 노동부 판정 또한 동일하게 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노동부가 지노위 판정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조속히 판정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할 수 있음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지회가 지노위 판정일까지로만 사건 처리를 연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고소사건 처리를 연장한 상태)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 협력업체 사장들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 또한 “향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에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주문..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쟁의기간중의 대체인력투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판단하면서..

① 쟁의행위 당시, 지회장 권한대행인 권수정의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지회는 관련 금속노조 규약에 의거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춘 바, 지회의 쟁의행위의 주체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②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2003년 지회가 설립된 이래 본 사건 구제신청일(2005. 1. 13)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절차상 문제가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③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지회의 주된 쟁의행위의 목적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성기업의 여유 인력 축소 문제 및 징계처분의 불만 등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주체, 목적 및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 쟁의행위기간중 대체인력 투입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①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간의 비상업무도급계약이 잔업거부가 발생한 시기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② 인원을 채용하면서 관행에서 벗어나 계약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 점

③ 잔업거부가 발생한 시기와 채용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점

④ 사용자측이 비상업무도급계약 이행, 휴직자, 퇴사자, 출장자의 업무 대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난 채용목적에 맞게 배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측이 지회의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온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보여진다.

□ 의의

○ 그동안 노동부는 '실업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대법원 관례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조시대의 낡은 행정해석으로 일관하면서 노동3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 이러한 구시대적 작태로 인해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중노위 해고 확정자 이므로 쟁의행

위의 주체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례에 이어 금번 충남지방법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 그러므로 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용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중노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비록 금번 불법대체인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협력업체사업주들에 한정된 것이지만 원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인원이 원청 총무팀 직인이 찍힌 출입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 따라서 불법대체인력을 묵인 내지는 방조하고 사실상 배후조종하는 원청자본의 탄압에 맞서 원하청 노조의 공동대응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비정규노조에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현대 자본의 직접 탄압]

[2005년 2월2일 현자비정규직노조 보도자료 중에서]

경악! 현대자본 아예 비정규직 전체 몰살시킬 계획!

- “2일까지 복귀 않으면 전원 해고시키겠다” 최후통첩!
- 24명 조합원에게 추가 형사고발, 총 118명 형사고발!
- 5공장 파업대오 전원에게 손해배상 제기!
- 노조간부 및 파업참가자 정문 출입마저 봉쇄!
- “이참에 다 죽이자” 정규직에 대한 현장통제·탄압도 극심!

(1) “2일까지 복귀 않으면 전원 해고시키겠다” 최후통첩!

“2월 2일까지 작업장 복귀를 명령한다. 복귀자에 한하여 선처를 고려하겠으나 미복귀자는 해고조치 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부당하고 철회! 불법대체인력 철수!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오늘로 16일째 힘차게 파업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에게 ‘최후통첩장’이 날아들었다. 그동안 ‘경고장’이 개인 뿐 아니라 집으로, 고향의 친지들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 그래도 파업대오가 흔들리지 않자 현대 자본은 아예 ‘비정규직 전원 몰살’을 결심한 것이다!

원하청 자본은 고향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해고,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등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 고향의 부모님들 가슴을 후벼파는 탄압! 매일 농성장으로 찾아오시는 부모님을 돌려세워야 하는 아픔! 정당한 투쟁으로 인해 왜 이토록 피눈물을 흘리게 한단 말인가!

그 뿐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통합사업부 박지연 동지에 대한 1차 징계해고를 필두로 조합 간부 2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공장, 2공장, 3공장, 5공장에서 매일같이 열리고 있다.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학살위원회’이며 배후에서는 현대자동차(주)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

(2) 24명 조합원에게 추가 형사고발, 총 118명 형사고발!

1월20일 84명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발! 1월25일 10명 추가 형사고발! 2월1일 24명 추가 고발!

불법파견 주범 현대자동차(주)는 무려 1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자행했다. 동부경찰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곧바로 소환장을 날리기 시작했고, 농성자 가족들은 또다시 소환장을 보며 가슴을 떨어야 했다! '불법'은 현대 자본이 자행했는데 어째서 비정규직이 끌려가야 한단 말인가!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동부경찰서는 고발 석달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아직 그들을 한번도 소환조사한 적이 없다! 고발 당사자인 노동부 역시 엄정조사 한번 촉구해본 적이 없다! 자본에게는 무한히 굶신거리며 비정규직에게는 무한탄압을 가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역할이란 말인가!

(3) 5공장 파업대오 전원에게 손해배상 제기!

불법파견 주범 현대자동차(주)는 어제(2월1일) 5공장 비정규직 87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87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며 임금을 중간갈취해온 액수가 수십억대에 이를 터인데 도대체 누가 손해를 입었다는 말인가!

사측은 이번 손해배상소송이 '1차분'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현대 자본은 5공장 파업농성대오 전원에게 대한 집단해고, 형사고발, 손해배상, 물리적 침탈기도, 출입통제 등으로 말려죽이려는 것이다!

(4) 노조간부 및 파업참가자 정문 출입마저 봉쇄!

1월18일 5공장 파업투쟁 직후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들이 일제히 출입증을 변조하기 시작했다. 출입증에 자그마한 비표 하나를 붙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파업농성대오와 간부파업대오에만큼은 비표를 교부하지 않았다. 파업농성자들과 노조 간부들의 정문 출입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

오늘 오전에는 조가영 사무국장 직무대행과 5공장 농성자 2명이 5공장 정문을 들어서자 원청 경비대와 관리자들이 몰려나와 들어내고 밖으로 내동댕이치는 사건까지 발생

했다. 아니, 해고 상태도 아니고 출입금지가처분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출입을 통제한다 말인가!!

노동조합은 사측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울산노동사무소 측에도 사측의 불법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불법파견, 불법대체인력,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불법적인 폭력으로 출입통제까지, 현대자동차(주)는 불법으로만 유지되는 회사란 말인가!

(5) “이참에 다 죽이자” 정규직에 대한 현장통제·탄압도 극심!

비정규노조에 쏟아지는 탄압은 비단 비정규직만을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이 아니다. 이참에 현장 전체를 병영식으로 통제하고 바른말하는 정규직 활동가들과 조합원들까지도 움아매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원청 관리자들과 경비대들이 현장 안을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원하청 공동 집회마저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문 경비대의 경비태세를 강화하며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비정규노조 활동가들에게 관리자들이 삼삼오오 달라붙어 미행을 하며 현장 전체에 “찍소리 마라”는 무언의 협박을 전달하고 있다. 커피자판기 앞과 휴게실에도 관리자들이 들어서 정규·비정규 활동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다시한번 70~80년대 병영식 현장통제, 관리자 천국을 만들며 ‘암흑의 현장’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탄압이 거셀수록 비정규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세진다!

현대자동차(주)가 비정규노조에 이토록 엄청난 탄압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불법자본’으로서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당성이 없기에 오로지 막가파식 탄압만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비정규직노조는 힘에 부쳐 쓰러질지언정 우리가 가진 힘조차 다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불법자본’을 응징하고 비정규노동과 차별을 철폐하는 길이 사회정의와 맞닿아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27명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협박! 5공장 파업대오 전원해고 최후통첩! 118명 형사 고소 고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 노조간부에 대한 출입통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한시하청 파리목숨 불법대체인력 투입! 원하청 관리자들을 동원한 폭압적 현장통제!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 경고장 발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협박! ……………

이 모든 탄압목록을 분명히 기억해두자! '불법자본' 현대자동차(주)가 비정규직 몰살시키려 자행한 이 모든 탄압행위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마지막 발악이었음을 역사가 기록하도록!

[무자비한 현대 자본의 폭력만행]

■ 1월21일 (金)

- 오늘 주간조 잔업을 거부하고 본관 앞으로 모여든 150여 조합원들은 힘차게 불법과건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려 하였다. 오늘 집회는 본관 '항의' 집회가 아니라 단순히 집결지를 본관 앞으로 한 집회로서, 노동조합은 간단한 약식집회를 한 후 해산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오늘 경비대의 행동은 아예 도발을 하려고 작정을 한 모습이었다. 오늘 집회 사회를 맡은 1공장 최병승 동지가 핸드마이크를 들고 대오를 정비하려 하자, 경비대 측에서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야, 핸드마이크 사용하지 마!"라며 도발을 시작했다.

- 자칫 격앙될지 모를 상황에서 최병승 동지는 차분하게 대오를 향해 "내가 경비대에게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대응하지 말라. 우리는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마칠 계획이니 저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며 집회를 시작하려 하자, 경비대들은 갑자기 들이닥쳐 핸드마이크를 빼앗아가고 말았다.

- 그러나 집회대오는 평화 기조를 유지하며 경비대의 도발에 차분하게 집회를 계속하려 하자, 경비 한 명이 갑자기 집회대오로 들어오더니 맨 앞줄에서 캠코더로 집회 상황을 찍고 있던 이성환 조합원을 경비대 쪽으로 확 밀어버린 후 끌고가려 했다.

- 2명의 조합원들이 끌려가던 이성환 조합원을 붙잡고 방어하려 하자, 이번에는 경비대들이 우루루 몰려와 그들까지 붙잡고 경비대 측으로 질질 끌고가 둘러싸더니 구둑발로 짓밟기 시작했다! 집회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끌려간 조합원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 보았지만 경비대는 짐승처럼, 야수처럼 흠씬 두들겨팼 후에야 우리 조합원들을 내주었다.

-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서야 일어난 동지들의 모습이란!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 2월13일 (日)

- 구정휴가 마지막 날이자 파업농성 27일차 (이날 구정휴가 중이라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않았음)
- 낮 12시경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식사를 위해 2층 농성장에서 안기호 위원장이 조병용, 백판기, 신철기 조합원과 함께 신타모 식당으로 가는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1층에 거의 다 내려올 즈음 1층 검사실 안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던 100여명의 경비 및 원청 관리자들이 덮치며 안기호 위원장 납치
- 팔과 목을 비틀며 안기호 위원장 사지를 들고 건물 바깥에 미리 대기시켜놓은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뒤, 잠바로 안기호 위원장의 얼굴을 덮어씌운 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
- 안기호 위원장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는 5공장 정문으로 이동한 뒤, 5공장 정문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동부경찰서 차량으로 안기호 위원장을 인계함. 동부경찰서 형사들은 미리 준비해온 안기호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긴급체포

이날 안기호 위원장 검거를 지휘한 장승호 형사반장은 "합동으로 검거한 것은 아니다"라며 "11시 50분경 '수배자를 정문밖으로 퇴거시키니 검거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이고 하니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기호 위원장 폭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기엔 상처가 별로 심각한 것 같지는 않더라"며 "목에는 푸른 멍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경비대와 마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2월13일자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안기호 위원장 13일 긴급체포" (문형구 기자) -

- 12시20분경 노동조합은 안기호 위원장이 동부경찰서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함. 안기호 위원장 가족이 급히 동부경찰서로 면회하러 이동함
- 오후 3시경 현자비정규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 약 50여명이 동부경찰서 항의방문 후 안기호 위원장 특별면회 (면회 과정에서 온몸에 난 상처부위 등 확인하고 당일 벌어진 강제납치 및 폭력연행에 대한 당사자 진술 청취)
- 안기호 위원장, "검경과 현대자본의 합동작전으로 백주대낮에 천인공노할 탄압만행이 벌어졌다"며 이번 탄압을 비정규노조 죽이기로 규정하고 항의 차원에서 무기한 옥중단식농성 돌입
- 노동조합은 오후 7시경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모든 임원들(안기호 위원장, 김상록 부위원장, 서쌍용 사무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조직체계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조가영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함

■ 2월21일 (月)

- 오전 8시경 여성농성자 5명이 신타모 식당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려는 순간, 원청 경비대와 관리자들 무려 200여명이 몰려와 폭력적으로 침탈함
- 이 과정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려 했던 김정희 조합원(46세)을 비롯해 경비대 폭행을 말리기 위해 나온 남성 농성자들 10여명이 크게 다쳤고, 심지어 권오출 조합원(29세)에 대해서는 경비대들이 끌고 가 벽 모서리에 머리를 쳐박는 만행을 저질러 이마 부위가 찢어졌을 뿐 아니라 상처 부위가 갈라지는 등 처참하게 부상을 입음. 김정희 조합원도 이 과정에서 경비대가 밀어 넘어졌으며 엄청난 폭력만행에 실신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실려감
- 폭력만행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농성자 중 1명인 정영미 조합원이 상의를 벗고 항의하기까지 했으나 원청 경비대와 관리자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음
- 부상자들이 많았으나 일단 상처가 깊은 4명의 조합원을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권오출 조합원과 김정희 조합원은 입원하여 2~3일 정도 경과를 보도록 함
- 김정희 조합원을 제외한 4명의 여성 농성자는 이날부터 예정대로 신타모 식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단식농성에 돌입한 여성농성자 성명서 중 일부>

저희는 약자입니다. 농성장안에서 보호만을 받아왔습니다.

어제는 농성장에 사측관리자들이 경비대를 대거 동원해 왔습니다. 저희를 농성장에서 무력으로 끌어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대다수 농성장의 젊은 친구들은 만반의 준비를 했고, 그곳에서도 저희는 농성장 안에서 숨죽이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자신에게 ...

그러나 이제는 충분히 지켜봤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나설 것입니다. 아니 나서야만 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 더 이상 보호안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설 것입니다.



■ 3월23일 (水)

윤성근 현자노조 전 위원장, 정규직 대·소위원, 비정규직 40여명을 무차별 폭행!
본관 앞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

1. 3월 23일 (수) 낮 12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는 원하청 공동으로 불법파견 철폐와 비정규직 탄압 분쇄를 위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발언과 구호, 노래 등으로 약 30여분간 진행되었다.

집회를 마치고 참가했던 대부분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근처 본관식당으로 이동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비정규 대오 약 40여명은, [4월 총파업·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단] 노동자들이 곧 본관 정문 앞에 도착해 연대의 인사를 전한 후 다음 투쟁 장소로 이동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동지들을 기다리며 본관 정문 안쪽에서 질서 있게 대오를 갖추어 지극히 평화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2. 10분 가량이 지난 낮 12시 40분경, 비정규 대오와 경비대간의 몸싸움은커녕 어떠한 말다툼조차 없던 그때, 너무나도 갑자기 경비대의 극악한 테러가 시작됐다. 순식간에 몰려나온 2백여명의 경비들은 다짜고짜 대오쪽으로 “야 이 십새끼들”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달려들었다.

3. 본관 정문은 순식간에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돌변했다. 이미 인간이길 포기하기로 작심한 경비들은 단단히 베틀든 듯 닥치는 대로 잡히는 대로 여성조차도 가리지 않고 주먹과 구둑발을 날렸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해하며 비정규 대오들은 대부분 어떠한 저항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뒤로 물러나기만 했을 뿐인데도, 도발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듯 잠시의 주저함도 없었다.

거의 정신이 나간 듯이 경비들은 본관 잔디밭 앞에 설치된 천막까지 한참을 따라왔고 한참동안 폭력을 계속했다.

4.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았다. 비정규 대오와 함께 있다 테러를 막으려던 윤성근 현자노조 전 위원장은 물론 정규직 노조 대·소위원, 교육위원 동지들에게도 서슴없이 주먹과 구둑발이 날아들었다.

단 한놈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모든 노동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넘어지는 노동자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일제히 떼거리로 달려들어 얼굴과 온몸을 사정없이 지근지근 짓밟았

다. 테러를 자행하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만면에 웃음을 띤 경비들을 보며 우리는 온몸을 휘감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가던 노동자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테러를 목격하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두들겨 맞고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고, 부상 정도가 심각했던 윤성근 전 위원장과 4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울산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5.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비정규 대오에 대한 테러가 정리될 썸인 오후 1시경 전국순회투쟁단 노동자들을 실은 버스가 본관 정문 앞에 도착했다. 노동자들이 내리자마자 또한번의 생지옥이 연출됐다. 이성이란 걸 내버린 채 정신착란까지 의심될 정도로 광분해 있던 경비들은 잠시 전의 만행이 아쉬운 듯 버스에 내린 순회투쟁단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테러를 감행했다. 온힘을 다해 노동자들을 흠씬 두들겨 팬 것은 물론 이 장면을 촬영한 매일노동뉴스 기자의 카메라를 탈취해 데이터가 저장된 디스크를 도둑질해 갔다.

이 테러로 인해 통신비정규노조 윤순재 위원장과 2명의 노동자가 깊은 상처를 입고 울산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또한 경비들은 정문을 지나던 지역주민에게 까지 폭력을 휘둘러 거센 항의를 받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토론회
울산지역의 인권현황과 과제

진정 열린사회를 꿈꾸며

토론7. 김남진 (팀장, 1218이주노동자지원센터)

진정 열린 사회를 꿈꾸며

이 남 진
(1218이주노동자지원센터)

I. 외국인정책 기본 현황

1. 이주노동자의 기본현황

법무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연간 출입국자 수 4천만명, 체류외국인 수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으로 외국 전문 인력의 유치,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될 외국인 동포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와 취업 보장, 인권보장 등을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지만 과연 현재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로 동남아시아출신의 젊은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일자리를 찾아 한국사회에 들어온 지 꼭 15년이 된다. 그 긴 시간이 지나서야 '현대판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입법청원이 있는 지 8년 만에 고용허가제("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가 입법되었다.

이민정책을 논의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아닌가 한다. 노동력 중심의 사고에서 '이주민' 전체로의 인식 전환, 관리와 통제 위주의 경직되고 배타적인 외국인 정책에서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유연한 정책으로의 전환, 국익과 순혈주의를 운운하며 이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안겨주는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최근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외국인노동자 현황 (2006. 3.31.현재)

< 표 1 : 총괄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203개국)	단기체류자(198개국)	등록외국인(173개국)	외국인동포거소신고(48개국)
총체류	804,547	247,940	530,555	20,052
미등록(불법)	185,550	80,280	104,470	800

< 표 2 : 국적별 현황 >

(단위 :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동포)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우즈벡	기타
총체류	804,547	321,406 (193,637)	33,972	42,325	14,831	23,751	43,320	24,926	13,965	286,051
미등록 (불법)	185,550	80,394 (36,552)	11,259	13,661	13,224	5,884	11,893	10,374	6,355	32,506

< 표 3 : 비전문취업 현황 >

(단위 : 명)

국적	계	중국(동포)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고	기타
총체류	131,903	55,288 (42,358)	12,808	6,612	14,724	15,187	9,597	17,687
미등록(불법)	55,759	24,778 (12,249)	3,911	1,863	5,075	3,483	2,850	13,799

< 표 4 : 산업연수생 현황 >

(단위 : 명)

국적	계	중국(동포)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우즈벡	스리랑카	기타
총체류	67,324	23,054 (5,821)	7,955	7,568	7,204	2,564	5,695	3,843	2,453	6,988
미등록(불법)	24,027	8,787 (4,613)	2,208	3,284	2,457					

< 표 5 : 울산광역시 체류자격별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산업 연수	무역 경영	회화 지도	연수 취업	비전문 취업	취업 관리제	국민 배우자	동반	기타
06 (1~10)	10,142	1,849	771	312	1,551	1,558	903	1,421	481	1,296

2. 이주노동자들의 실태

-2006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참조

(1) 월평균 급여

월평균 급여수준은 71-80만원이 전체의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91-100만원이 19.4%, 70만원 이하가 14.6%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조사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51.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 표 6 : 월 평균 급여 수준 >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70만원 이하	43	14.6
71-80	125	42.5
81-90	44	15.0
91-100	57	19.4
101-110	7	2.4
111만원 이상	18	6.1
전 체	294	100.0

계약서상의 기본급은 697,755원으로 나타나 2005년 9월 이전 최저임금인 641,840원과 2005년 9월 이후의 최저임금인 700,600원 사이의 평균으로 짐작되며, 이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여준다.

응답자 294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832,737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으나 급여액에 잔업 등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됐음을 감안할 때 내국인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평가된다. 또한, 응답자들이 하루 평균 11시간(노동시간 설문조사 결과 참고)을 노동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많은 사업장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을 개연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례 1> 로잔 (스리랑카, 남 29세)

경기도 김포시 소재 ○○테크에 근무하는 로잔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매월 주,야 맞교대근무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본인들의 받는 급여는 매월 80만원이었고, 2006년에 들어서서야 그나마 9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를 찾은

로잔씨는 본인이 매월 11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아야 함을 알게되었다. 로잔씨는 인권 단체를 통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측에 급여의 올바른 정산과 미지급금의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근무시간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내국인과 달리 매우 유동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하루계약 근무시간과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표 7 : 하루 계약 근무시간 >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8시간 이하	246	82.8
9-10	21	7.1
11-12	27	9.1
13시간 이상	3	1.0
전 체	297	100.0

하루계약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8시간 이하가 82.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응답자 297명의 평균 하루계약 근무시간은 8.43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간 외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2-3시간이 가장 많은 74.4%를 차지했으며,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도 14.2%나 차지했다.

< 표 8 : 하루 평균 시간 외 노동시간 >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2시간 미만	30	11.5
2-3 시간	194	74.3
4-5 시간	29	11.1
5시간 초과	8	3.1
전 체	261	100.0

산업연수제 하의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다를 바 없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근로하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장시간의 노동과 시간외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센터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과 맞물려 그들의

주거나 급식상태 역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는 시간을 내기도 힘들다.

사례 2> 경기도 용인의 한 기업이 중국인노동자들을(왕진군, 마선홍, 손명리, 손흠충 등) 기술교육 목적으로 한국에 들여와 강제 노동과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여 왔다. 이들 중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 중국 돈350위엔(한국 돈 약 4만8천원)을 받고 있었다. 새벽 4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하루 16시간의 초인적 근무 시키면서 이들이 받은 총금액은 50만원 정도이다. 그나마 결근할 경우 시간당 3,7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토요일 중 잔업이 없는 날에는 저녁이 제공 되지 않으며, 일요일에도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회사는 중국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중국인노동자를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3개월 뒤 다시 돌려보냈다가 재입국 시키는 방법으로 노동 착취를 의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회사에 1만 위엔(중국현지 임금의 약 28개월)의 보증금을 내고 왔으며 회사를 이탈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사실상 노예 계약이었다.

(3) 인권침해

< 표 9 : 직장 내 인권침해 경험>

(단위 : 명, %/ 복수응답 n=164)

구 분	빈도	백분율
관리자의 폭력	51	31.1
신분증 압류	88	53.7
통장 압류	26	15.9
외출제한 금지	19	11.6
강제근로	47	28.7
한국동료와 차별대우	91	55.5
기타	7	2.1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침해를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응답자 164명 중 과반수가 넘는 91명이 한국동료와의 차별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사업주에 대한 인식개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비록 고용허가제 관련법 안에 내국인과의 차별 금지조항¹⁶⁾이 있으나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마련하지 않은 선언적인 규정일 뿐이

16)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

다. 신분증 압류도 과반수가 넘는 53.7%의 이주노동자가 경험하고 있어 지난해 조사를 통해 드러났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의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30%를 넘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II. 외국인력제도의 현실과 개선방향

1. 고용허가제의 현주소

고용허가제는 2003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이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1991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국내 도입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한국취업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후, 산업연수생 도입과정에서 최대 이권단체로 자리 잡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강한 반대로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은 매년 무산되던 중 8년 만에 이루어진, 고용허가제의 입법은 외국인력제도 개선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산업연수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송출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국가 간 쌍무협정을 맺어 인력송출 업무를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맡도록 한 점,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인권개선을 제도화한 점은 그나마 이전의 제도보다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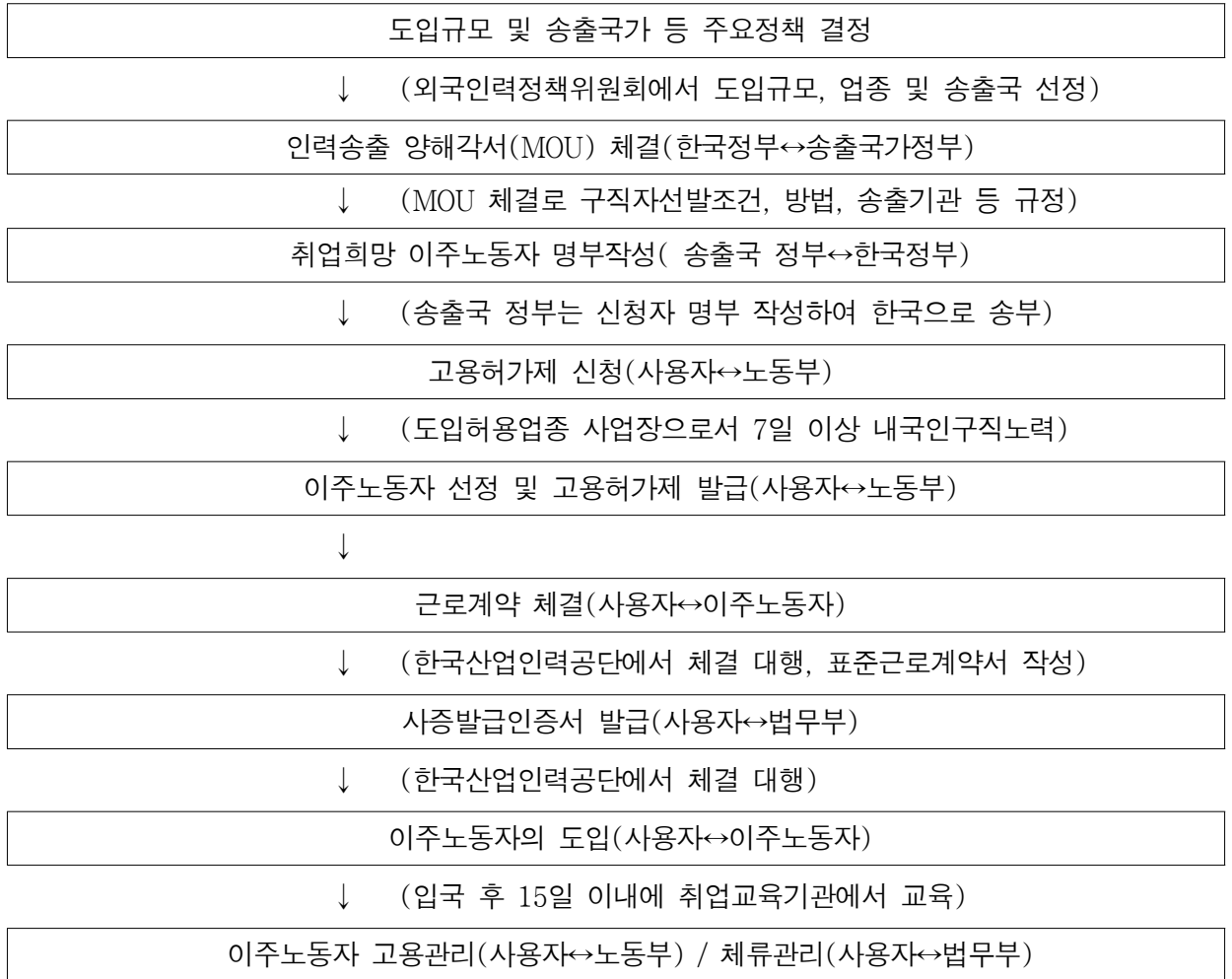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의 전면적인 시행 2년째에 접어들면서도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인권·시민단체로부터도,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로부터도 지지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고용허가제의 시행과 함께 기대했던,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이나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의 감소, 송출비리 척결 등 합리적 외국인력시스템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력제도는 통합성과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과 '관리와 통제' 중심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주를 인정하지 않는 단기순환고용정책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 그림 1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과정 >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www.eps.go.kr)

2. 문제점

가. 산업연수제와의 병행실시 (외국인력시스템이 단일화 되지 못함)

2006년 11월 현재 한국의 외국인력제도는 고용허가제와 기존 산업연수제도와 병행 실시되고 있다.

산업연수제도는 “외국인력의 편법고용, 과도한 입국비용 등 송출비리,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불법체류자 양산” 등으로 이미 실패한 제도라 평가받고 있음에도, 연수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용허가제의 시행은 연수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조차 고용허가제가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2005년 7월 27일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하여 이 부분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인권침해

고용허가제 도입의 주요한 의의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인권개선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체감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최저 수준이다. 2003년 고용허가제 국회통과 후 실시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강제단속의 공포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다라카씨, 네팔이주노동자 리톤씨, 중국동포이주노동자 김원섭씨 등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2006년 접어들어서만도 지난 2월 강제추방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터키노동자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추락사망사건에 이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무리한 단속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추락사망사건, 같은 4월 중국동포 산업연수생이 유해화학물질 DMF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5월에는 한 달에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던 베트남노동자의 과로사, 연수생의 이탈방지 명목으로 적금통장에 회사인감을 사용하고 무단 인출하여 회사에서 압류한 경우 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분증 등의 압류 등은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일꾼이기도 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정부기관과 기업을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착잡함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

다. 사업장이동제한의 문제점

사업장이동제한은 지난 2년간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그러나 사업장이동제한이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사업장변경의 사유와 사업주의 날인이 들어간 '사업장변경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을 하고 사업장변경신청이 완료되면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를 동 센터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 행정적 절차가 완료된다. 다시 말하자면 관련법에 규정한 불가피한 상황 등이 아닌 경우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법상 불가피한 경우 즉, 회사도산이나 폐업, 노동관계법위반 및 폭행 등의 인권침해, 상해 등의 이유로 사업장이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리 또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맡고 있다.

또한 관련법¹⁷⁾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3회, 특수한 경우에 있어 총 4회로 사업장 이동 횟수로 제한하여 놓았다. 이 조항에 따라 계속적인 인권침해사항이 발생할 경우라도 4회 이상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해 이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는 본국으로 출국을 하여야 하거나 미등록자로 전락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본인의 계약갱신으로 인한 사업장이동을 승인하고 있는 현재, 계약만으로 사업장을 이동하게 되면 총 2회의 사업장 이동 횟수를 사용하게 되어 부득이한 경우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나머지 1회로 제한되게 되는 형편이다.

본 센터의 경우 상담현황을 보면 임금체불과 더불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업장이동에 관련한 내용들이다. 사업장이동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법에 제한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이와 더불어 1년 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어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고 이를 악용한 사용주의 횡포를 다 견뎌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제한하는 요소들이다.

17)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 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 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 표 10 : 사업장이동을 희망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낮은 임금	123	25.7
장시간노동	60	12.5
과중한 업무	68	14.2
작업장안전도	42	8.8
폭력	39	8.1
숙소시설문제	40	8.4
식사문제	43	9.0
오락문화시설부재	32	6.7
기타	32	6.7
전 체	479	100.0

위에 자료처럼 근로를 지속하기 힘든 치명적인 원인들로 사업장 이동을 원하고 있지만 제한조항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속 아닌 구속을 받고 있다.

3. 개선방향

(1) 제도운영의 현지화

현지의 모집과정, 신청 및 선발과정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지의 인프라 구축정도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송출국들에게 한국의 정보 인프라 수준을 기준으로 현지사정에 맞지 않은 내용들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지의 인터넷 보급률이 미약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모집공고는 정보공개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전화 보급률이 떨어지는 송출국의 경우 전화통보 등의 방법들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집과정을 예를 들면 현지의 사정에 따라 정기적인 설명회의 개최, 고용허가제 관련 안내문 발송, 현지 NGO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개 캠페인 등을 통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지 모니터링 강화

고용허가제의 경우 현지의 송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송출국 정부가 문제를 개선하거나 문제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의 인력도입지체와 송출비리 등으로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 초까지 인력도입이 중단조치가 내려졌고, 몽골의 경우 사

업장을 이탈하는 인원이 많아지자 그에 대한 경고 조치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3개월가량 중단조치를 받았다.

현지 송출비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고용허가제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송출중단이라는 조치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송출국에는 송출비리 차단의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경우 송출과정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됨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개선 및 초과체류의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가 크다고 해서 중단조치를 쉽사리 난발하여서는 안된다. 송출 중단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사업주와 송출대기과정에 있는 현지의 신청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한국정부와 송출국정부, 한국의 사업주와 송출국의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제 발생 시 송출국정부와 동반자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현지 사무소의 설치 등을 통해 현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문제가 소지가 발생할 경우 송출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이동제한폐지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위반 등 노동관계법위반, 내국인과의 차별, 신분증압류, 폭행 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할 경우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관계법위반의 경우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거나 신분증압류와 폭행 등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할 뿐 더러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 발이 묶여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듯 사업장이동제한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상황을 회피할 수 없게 강제하여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근본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동 횟수제한, 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구직기간 등 사업장이동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법제도 등이 사업장이동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사례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이해관계가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관계에 행정절차가 개입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후지원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이동

지원을 그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물론 사업장이동지원을 제외하더라도 공적 사후지원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이며 또한 정부의 계획대로 시스템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이동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공적영역의 사후지원시스템이 역기능을 하게 될 경우 복잡한 사업장이동문제에 또 다른 유사행정절차를 신설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이동규정에 대한 완화나 사후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보완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없으며 사업장이동제한을 폐지하는 길 만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진정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 「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사업장이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사후지원시스템 및 고용허가제 대행업무의 공공성확보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제 및 이주노동자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위한 사후지원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이주인권연대는 지난해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고용관리, 체류허가 등 각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가 그 운영을 책임지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의사소통을 위한 통, 번역지원,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의 진행,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 질병이나 구직 중에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쉼터제공 등을 포함한 사후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뒤늦게나마 사후지원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에 따라 여기서는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후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에 검토해 보고 이주인권연대의 제안을 더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사후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은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행기관에 대한 논의는 사후지원시스템 및 고용허가제 시행 전반에 관한 방향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사후지원시스템

지난 2006년 3월 2일에 열린 제2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2007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력정책의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른 대행업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

였다. 회의에서는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부직접수행, 주관 기관수행, 다수기관 참여 등으로 나누어 그 역할에 맞는 정부조직과 기관이 각각의 업무를 나누어 참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후지원업무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기관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¹⁸⁾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① 사용주와 사이에서의 분쟁조정자 역할수행, ② 사용자와 이주노동자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수행, ③ 고용허가제관련 기관과 송출국 및 이주노동자지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④ 출입국지원 및 고용허가제 관련업무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제공 등을 기본방침으로 한 사후관리서비스 확대실시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방안 안에는 사업장내 애로 및 갈등 조정, 조기귀국자에 대한 출국지원, 재해사고 지원, 쉼터제공을 포함한 사업장변경지원, 생활상담 및 고충지원, 체류관리신고 및 업무행정지원 등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자 산업인력공단은 가장 먼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협력체계구축에 나섰다. 정부의 인적, 물적 조직의 부족을 극복하고 이주노동자문제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국적인 규모의 사후지원시스템을 단 시간 내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산업인력공단 인천지부와 경기북부지사에서 총 3개의 협력단체를 지정하여 사후지원업무를 시범 실시하였고, 2006년 초 전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사후관리 동참조사'에서 "적극희망"으로 동참의사를 밝힌 34개의 단체를 이후 추가로 협력지원단체로 지정할 계획이다.¹⁹⁾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 협력방식에 대해 전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없었을 뿐더러 공청회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조치 거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외국인 사후관리 동참조사' 과정에서는 그나마 협력방식에 대한 내용도 없이 단순히 동참 유무만을 조사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이주노동자에 사후지원은 이주노동자의 생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문제의 해결과 지원을 통해 작게는 사용주와 이주노동자의 인식개선과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크게는 우리사회 전체의 사회적 화합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8)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른 대행 업무등 제도개선 방안」 2006.3.2 제 외국인력정책관계부처실무협 의자료

19)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서비스 확대실시 방안」 2006. 3. 근로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정부는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른 대행업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며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를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부직접수행, 주관기관수행, 다수기관 참여로 나누어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하였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직접수행'의 경우는 구직자 알선, 고용허가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발급등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를, '주관기관수행'의 경우 이주노동자와의 입국계획, 근로자명부 관리, 한국어인증시험 관리 등 송출국과의 교섭 및 전문성을 갖춘 업무를, '다수기관 참여'의 경우는 고용허가제 관련 절차(고용허가서, 인력부족확인서, 사증발급인정서 등) 신청대행, 취업교육 및 외국 인력의 사용자 인도 등 외국 인력에 대한 신청대행 등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업무를 뜻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직접수행'의 경우 노동부고용지원센터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기존의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주관기관수행'의 경우는 송출국과의 교섭 및 사후지원업무와 한국어능력인증시험 실시를 각각 산업인력공단과 한글학회등이 수행하며, '다수기관 참여' 업무는 기존에 신청대행, 취업교육 등 사업주 대행 업무를 맡아오던 산업인력공단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농협, 수협, 건설협 등 연수추천단체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기관 참여'의 경우에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기협 등 연수추천단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연수제를 시행하며 송출비리와 인권침해의 주범이 되어 온 연수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정부(노동부)는 '다수기관참여업무' 즉, 인권침해와 송출비리 개연성이 적은 업무로 한정시켜 참여를 시키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접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외국인력정책을 왜곡시키고 송출과정에서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해온 기관들에게 돌아갈 것은 국가차원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지 새로운 인력정책에 참여하게 하여 기득권의 일부를 유지시켜주는 일이 아닌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연수추천단체를 참여시키는 이유로 다수기관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다. 정부는 사업주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그것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편법을 확산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에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다수기관의 참여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만일 농업, 수협 등 직종에 따른 도입인력을 관련 연수추천단체가 전담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쟁효과는 미미해 질 것 이고, 지향점이 없는 경쟁 그자체가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 확신할 수도 없다. 산업연수제를 시행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켜온 연수추천단체가 사업주의 역할을 대행하며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다수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여 경쟁체제를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개선되고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제도를 시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전담하여야 하여 입국 후 제도의 모든 절차에 정부의 지도와 관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5) 고용허가제 관련 교육의 실질화

-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의 강화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입국 전 최소 85시간, 입국 후 20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한국어, 한국문화, 기술기능교육 등을 포함한 한국생활에 필요한 교육들이고 설문조사를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응답자들이 한국어 및 기술기능교육에 대한 교육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교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입국 후 교육의 경우는 교육의 질이 높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입국 전 사전교육의 경우 물적, 인적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송출국 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이 문제에 관하여 현지조사에 대한 제언으로 한국정부의 지원확대를 언급 하였지만, 그 밖에 입국 후 교육을 강화 하여 사전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간의 사전 교육이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부 국가의 경우 사전교육기관이 송출비리에 개입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보면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춘 입국 후 교육을 1~2주 과정으로 확대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사업주 교육의 강화

설문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가 사업장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업주에 대한 관련제도 및 인권교육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입국 후 교육기관에서 신규인력을 인수 시 1시간의 교육이 전부이다. 또한, 신규인력을 도입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1시간의 기본교육조차 받지 않고 있는 형편이며, 만일 이후 정부의 방침대로 '외국 인력의 사용주 인도' 등의 대행업무가 시작되면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들도 1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 사업주 교육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모두에 대해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주 교육은 기본적인 노동법교육, 고용허가제관련 교육, 인권침해방지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노동법교육의 경우 최저임금법등 사업주들의 이해도가 낮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여야 하고, 고용허가제 관련교육은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되 산업연수제와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인권침해방지교육은 규제사항의 나열이 아닌 실제피해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다문화이해교육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강조 보다는 차이를 포함한 동질성의 확인을 그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Ⅲ.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지난 6월 3일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이주노조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조합원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밝히고, 이에 덧붙여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조의 가입 설립 등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 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에 관한 논의와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주 노동자의 노동자성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는 노동자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있다면 노동자성이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취업한 경우, 동법의 목적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미 취업한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노동관계법령상의 제반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미등록 외국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판 1995.9.1. 94누12067).

2. 이주 노동자의 노동3권

노동3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한편 우리 헌법에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6조 제 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국제법 및 조약과 노동3권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제법 및 조약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0.4.1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A규약)」에서는 제2조에서…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장 될 것임을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87.12.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5조에서 노동조합결성 및 가입에 있어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 권고 제151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원 자격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노동3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긍정하게 되면, 전국가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긍

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권리가 되기 이전에 인간의 권리인 것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 가능할 것이다. 노동부가 적법한 취업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조를 설립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주체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주체성을 긍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외국의 사례

(1) 독일

독일의 경우 단결권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보장한다는 대에 이견이 없다, 독일 기본법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를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 대하여 보장되고 있다(제9조제3항). 이에 따라 통설은 단결권이 인간의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독일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들만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노조에 가입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에 위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노조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위 기본법 조항은 직접 표현된 거시 이상의 내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결의 자유는 노동조합 조직 내에서 활동을 할 권리 역시 포함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는 법률에 의해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활동할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데에도 아무런 법률적인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순기능인력을 수입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기능인력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예외적으로 노동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3권이 인정된다.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아래에서 실습의 단계로 이전한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되며, 남미로부터 들어온 일본계의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노동3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고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이
지가 논의되고 있다.

(3) 대만

대만의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
합법의 적용대상이다.

IV. 맺으며

고용허가제는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하여야 하는
단기로테이션정책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로테이션 정책은 사업주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없게 만들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재입국이 확실히 보장되
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미등록 체류를 선택하게 만들 것이다. 단기로테이션정책은
또 다시 외국인력정책에 비효율과 왜곡을 가지고 올 것이 자명하다. 독일의 경우, 일정
기간(8년) 범법사실 없이 성실하게 일한 것이 입증되면(납세증명서) 영주권 취득이 가
능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지난 5월 25일 미국 상원에서 1,100만 명의 불법체
류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는 포괄적 이민법을 통과시켜, 9.11
테러 이후 경직된 미국사회 조차도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더 중요시함으로 보여주고 있
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고학력·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 인력이 항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볼 때 지금
까지와 같이 '관리와 통제'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서는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의 정착과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와 통제'가 아니라 장기
적으로 정주를 인정하는 '상호 이해와 존중', '통합성과 유연성'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
요하다. 또한 무조건적인 신규인력 도입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미등록노동자들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성실하게 일하고 법을 준수하
면 재취업의 기회가 보장되고, 일정기간 한국사회에 기여하면 한국사회에 정착할 기
회가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 재취업을 위해 노력

할 것이고, 기업은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져 이주노동자, 기업, 그리고 한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점차 다문화 되어 가는 사회 준비하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울산지역의 경우 이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가정 등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동반자 의식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도와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조차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회의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인식하고 해결해나가고 연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노동자로서 살고 있는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원동력은 바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이다.

이미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의사소통의 수단과 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법무부 이민정책세미나 / “외국인정책방향”, 2006. 6. 8.

법무부 출입국정책추진단. 세계이민동향 vol.36 ~ vol.43, 2006. 6

김재진(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 3권, 정책세미나자료

2004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정기 심포지움 자료

박천웅 목사 칼럼, 안산이주민센터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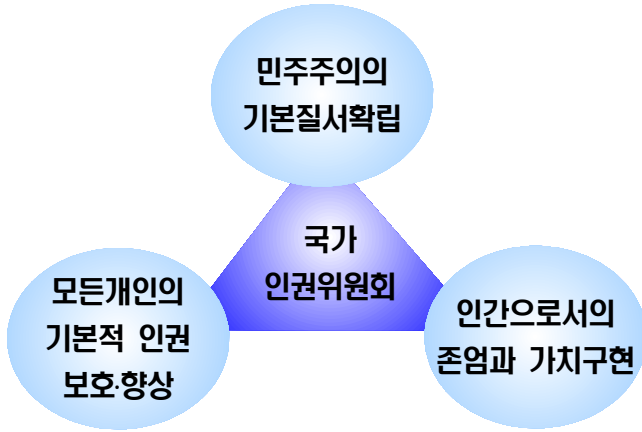
개소 1주년 기념
지역사무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지위

가. 설립목적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실현



※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성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로서

- ①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 인권전담 국가기구’
- ②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
- ③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구’
- ④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인권향상 역할을 하는 준사법 기구

다. 독립성의 의미 :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 “로서 누구의 지휘·간섭을 받지 않고 인권위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

라. 독립성의 근거

- ①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의 권고사항
 - 국가인권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정과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 ② 소속 없는 국가기관
- ③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 ④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에서 위원회 구성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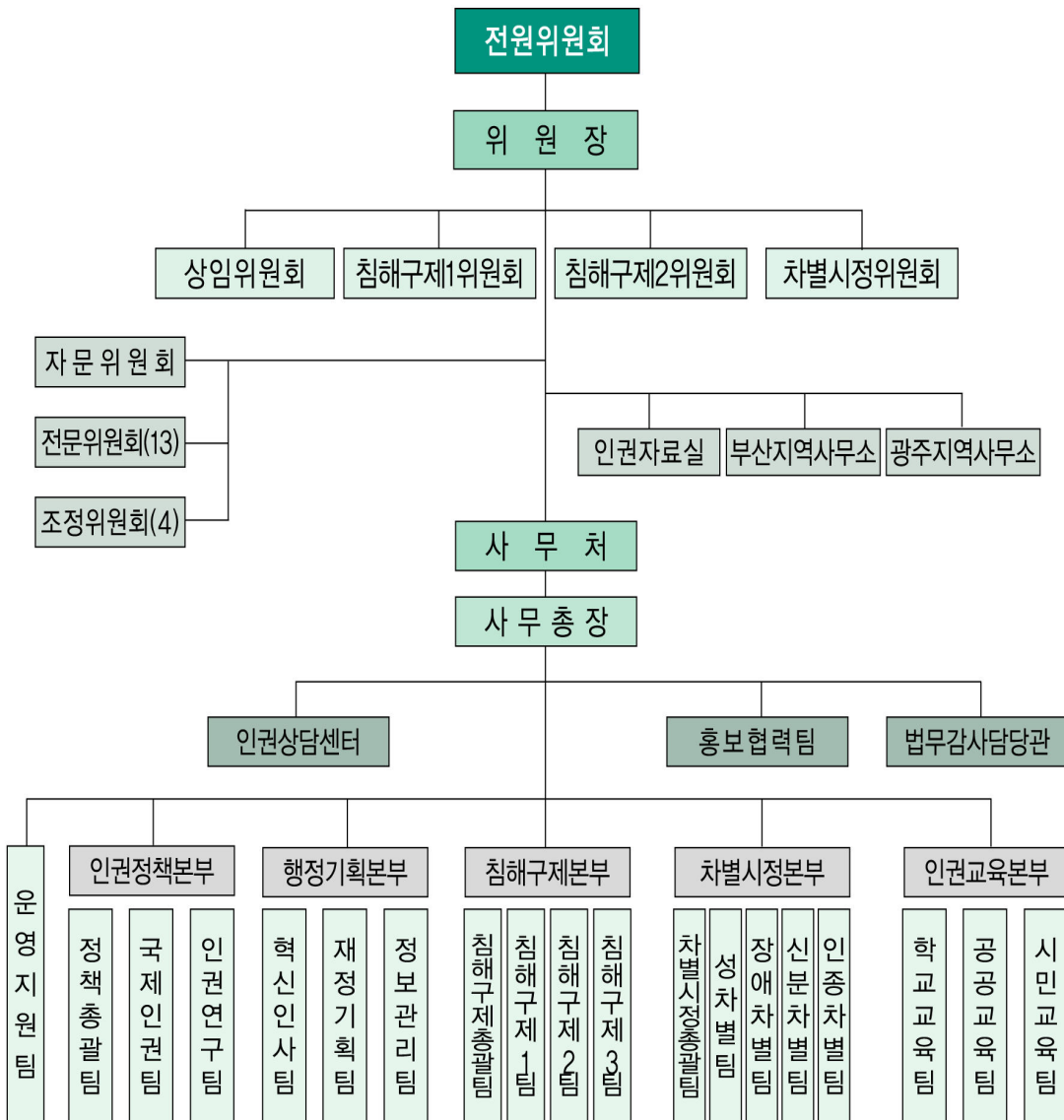
2.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기능

구 분	권 한	
정책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포함)·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요구, 사실조회, 청문회, 시설방문조사) ◆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정책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제출 ◆ 업무수행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와 협의요구 권한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조사·구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단, 입법 및 재판 제외)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 직권조사와 긴급구제조치 권고 가능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기능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 ◆ 초·중등교육과정에 인권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 ◆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교(전문대 포함) 총장 등과 협의 ◆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 훈련 과정에 인권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
	국내·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3.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가. 조직(2006.10.17 현재)

- ◆ 위원회 : 11명(위원장 1,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7)
- ◆ 사무처 : 5본부 22팀 3소속기관
- ◆ 정 원 : 201명



4. 주요활동

가.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또는 의견표명(2005년)대한 권고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1	형사소송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재정신청제도, 소송서류 열람등사권, 필요적 보석, 국선번호인 제도 등의 확대와 긴급 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함	1.24	법무부	검토 중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업건별 등록방식을 단체별 연간등록방식으로 수정하며, 비현실적인 모집비용 총당비율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함	1.24	행정자치부	일부 수용
3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	신원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조사대상자와 조사항목을 조정하고, 연좌제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되어야 함	2.14	국회, 국정정보원	일부 수용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세부정보제공제도는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당해 가해자의 세부정보제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정보등록제도 및 청소년 관련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규정은 수정·보완이 필요함	2.28	청소년 보호위원회	일부 수용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보호와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것은 재량사항으로 수정하고, 집행유예 선고 시 부과되는 치료보호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28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6	공무원 차등 정년에 대한 개선 권고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에 따라 차등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그 개정을 권고함	3.14	행정부 중앙인사위	검토 중
7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초등학생에게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 평가하는 것은 아동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개선하고,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고	3.25	교육인적 자원부	수용
8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4.6	국회, 법무부	검토 중
9	인신보호법안에 대한 의견	인신보호법안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므로 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율대상 확대, 조사 개시 시기 명시, 이해관계인의 필요적 의견청취제도 도입 등의 보완이 필요함	4.6	국회	검토 중
10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제한적 사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4.11	국회, 노동부	검토 중

연번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 용	의결일자	해당기관	수용여부
11	「외국인보호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중요사항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고지, 보호 외국인 사망 등의 경우 출신국 영사에게 통보 의무화, 격리보호 요건 및 기간의 제한 등이 필요함	5.23	법무부	일부 수용
12	통계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 개선 권고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만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	6.13	중앙인사위원회	검토 중
13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며, 강제이발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 권고	6.27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수용
14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은 행정의무위반행위의 비범죄화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7.14	법무부	일부 수용
15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의 확실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시설 등을 보험가입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며, 장애관련 공동계약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8.22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검토 중
16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비용, 위로금, 일실수입, 부양상실금 등의 구조범위 포함,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 삭제 등의 보완이 필요하고, 범죄피해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를 마련 권고	8.22	법무부, 경찰청	미수용
17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	가족 및 가정의 정의가 혼인·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을 조래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정비하며, 가치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10. 10	여성가족부	검토 중
18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일정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게임물 제공을 제한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함	10.24	국회	검토 중
19	반인도적 범죄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하여 공소시효 배제 및 정지 범죄의 범위 수정, 공소시효 정지 기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 소멸시효의 기간 연장,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에 대한 부진정소급효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11.14	국회, 법무부	검토 중
2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개정 권고	소재불명을 이유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을 인정하고 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	11.14	법무부, 법원행정처	검토 중
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개선 의견표명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의 범위를 결과적으로 조례·규칙·훈령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 및 복위임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11.28	노동부	검토 중
22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함	12.26	국회, 국방부	검토 중

나.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연도별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처리=진정+상담종결+철회) (단위: 건(월평균))

월	2001~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계
신청	1,243 (89)	2,615 (218)	3,514 (293)	3,383(282)	10,755 (215)
처리	1,104 (79)	2,600 (217)	3,385 (282)	3,459(288)	10,548 (209)

◆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구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 타	계
2001		619(77.1)	53(6.6)	131(16.3)	803(100.0)
2002		2,214(79.4)	136(4.8)	440(15.8)	2,790(100.0)
2003		3,041(79.7)	358(9.4)	416(10.9)	3,815(100.0)
2004		4,627(86.2)	389(7.2)	352(6.6)	5,368(100.0)
2005		4,199(74.8)	1,081(19.2)	337(6.0)	5,617(100.0)
총 계		14,700	2,017	1,676	18,393

다.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인권침해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건)

구 분	접수	종결	인 용						기각 이하				조사중
			고발, 수사 의뢰	법률 구 조청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종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 중지	
2002년 이전	2,833	1,365	3	-	16	2	8	-	136	26	1,174	-	18
2003년	3,041	3,137	9	-	3	2	57	23	717	116	2,210	-	9
2004년	4,627	4,931	6	4	2	-	79	54	1,280	148	3,306	52	22
2005년	4,199	4,117	6	2	6	1	156	73	1,317	147	2,362	47	1,101
총 계	14,700	13,550	24	6	27	5	300	150	3,450	437	9,052	99	1,150

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진정현황

(단위: 건(%))

구 분	고용에서의 차별(961건)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395건)						교육시설 등(109건)		기타		
	채용	해고	모집	임금	기타	배치	승진	임금외 품	퇴직	정년	교육	재화	응역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 시설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접 수	02년	189	18	10	6	17	5	1	9	6	1	0	1	30	3	2	2	0	1	7	3	67
	03년	358	54	61	21	26	9	14	11	4	6	3	0	29	2	0	1	1	0	14	3	99
	04년	389	22	17	51	12	34	18	9	4	5	3	0	40	10	2	1	0	1	24	2	134
	05년	1,081	148	45	90	50	86	17	36	12	10	3	6	151	87	9	13	5	5	51	5	252
	계	2,017	242	133	168	105	134	50	65	26	22	9	7	250	102	13	17	6	7	96	13	552
	구성비(%)	100	12.0	6.6	8.3	5.2	6.6	2.5	3.2	1.3	1.1	0.4	0.4	12.4	5.1	0.6	0.8	0.3	0.4	4.8	0.6	27.4
종결	1,603	181	120	142	86	99	43	45	23	17	7	5	158	73	11	12	3	4	70	13	491	
미결	414	61	13	26	19	35	7	20	3	5	2	2	92	29	2	5	3	3	26	0	61	

◆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종결	인 응			기 각 이 하				조사 중
			권 고	합 의 결 합 종	조 정	기 각	각 하	이 송	조 사 지	
2002년 이전	189	102	8	2	-	18	73	1	-	-
2003년	358	296	30	3	-	48	215	-	-	6
2004년	389	368	21	4	1	74	263	3	2	5
2005년	1,081	837	55	7	-	121	650	2	2	403
총계	2,017	1,603	114	16	1	261	1,201	6	4	414

마.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중 인권교육 분야 권고안

부문	국가정책방향	핵심추진과제
학교부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내용 체계적 통합편성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보급 ○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양성연수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
공직 종사자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종사자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로 인권교육 의무화 ○ 법 집행공무원 및 법률가 등 양성과정에 인권교육 강화 및 선발시험에 인권내용 포함 ○ 효과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보급 ○ 군대 및 준군사조직에서 인권교육 활성화
시민사회	인권이 중심가치가 되도록 대중 홍보강화 및 각 분야의 인권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시민사회의 인권교육 지원 강화 ○ 기업대상 인권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인권홍보 강화와 언론인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월간 <인권> 주요 내용

호 수	특집(기획)	인권이 만난 사람	기타 주요 기사
2005.1월	·“너, 몇 살이냐?”	「녹색평론」 발행인김종철	길에서 만난세상 - “한국 죽겼어요”
2005.2월	·인권과 기념일이 만날 때	하자센터 조한혜정 교장	세계의창 - ‘외교’만 있고 ‘인권’은 없다
2005.3월	·호주제, 폐지를 기념함	간디학교 양희규 교장	직원수기 - 성폭력 피해자의 또 다른 상처
2005.4월	·정신과시설의 인권	이돈명 변호사	시선 - 편견이 불치병이다
2005.5월	·다시, ‘인권’이 기준이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동춘 교수	길에서 만난세상 - “보안관찰법은 덮이고 높여거든”
2005.6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세진이 엄마 양정숙	휴먼필 - 흑룡강성에서 온 여자
2005.7월	·성차별·성희롱 이제 국가인권위로 오세요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	길에서 만난세상 - 코시안, 그리고 그의 엄마들
2005.8월	·말 속에 담긴 인권	사진작가 박영숙	휴먼필 - 피부색과 돈
2005.9월	·무척 ‘식상한’ 명절이야기	재심으로 긴헛 누명 벗은 함주명	세계의창 - 시각장애인과의 버스기사가 맞잡은 손
2005.10월	·차상위 계층, 가난의 바깥에서 떠돌다	일반학교 최초 시각장애인 교사 공광우	길에서 만난세상 - 내 몸에 자유를 허하라!
2005.11월	·대한민국의 성적 소수자들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세계의창 - 장애현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2005.12월	·우리도 버스를 타고 싶다	민가협 임기란 여사	현장 - 아이들, 인권과 친구되다

바.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005년 인권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단체명	지원액
1	무학·저학력 성인학습자와 노인 인권교육	가톨릭여성회관	3,700
2	지역 청소년 인권조례 운동을 위한 지원사업	군산YMCA	7,000
3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보장 프로그램	노동건강연대	7,160
4	노동인권학교 - 불안정노동과 인권	안산노동인권센터	3,710
5	지역 청소년 인권 신장운동 “너무 늦게 시작해서 미안하다...”	여수YMCA	7,000
6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이주노동자 귀환정착지원프로그램 개발 컨소시엄	7,900
7	경찰개혁을 위한 연속 정책 토론회	인권실천시민연대	7,430
8	아시아에서 필수약품 접근권 강화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아시아 보건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8,750
9	“잠시만요, 이제 내가 말할래요.”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8,250
10	장애해방을 향한 ‘전국 장애인 인권 활동가 대회’	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6,934
11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제1기 부모교육 사업	장애인 참교육 학부모회	6,560
12	‘장애인들의 고통과 인권 침해’ 시설 비리 문제 연상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장애인문화공간,다큐인	8,485
13	비정규직 인권보장 국제 학술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8,720
14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8,520
15	HIV 감염인/AIDS 환자들의 인권증진과 치료접근 확대를 위한 사업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 의료연합	9,810
16	2005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평화네트워크	8,216
17	수화통역센터장 및 통역사 인권교육을 통한 연대체 구성	한국농아인협회	8,460
18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창간	한국성적소수자문화 인권센터	8,230
19	빈곤여성 ‘사회권 확보’ 를 위한 인권의식 강화 교육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6,705
2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 유족 인권피해 실태조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8,460
합 계			150,000

사. 인권정보 서비스

◆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콘텐츠 내용

구분	개발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인권 배움 터	공통기본교육		· 인권 이해(8차시) · 장애차별 예방(10차시) · 성차별 예방(10차시)
	선택전문교육	· 경찰과 인권(8차시) · 교정과 인권(8차시) · 검찰과 인권(6차시)	· 행정과 인권(15차시)
	학교인권교실	· 우리 교과서의 인권	· 아동권리 이해 / · 사회적 약자 이해(각 30차시)
	어린이인권교실		· 인권동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69개 콘텐츠 · 인권동화 5편
인권체 험터	· 인권동화 2편	· 인권동화(1편) / · 인권사진(34개) / · 만화(13편) · 애니메이션(23편) / · 영상 및 홍보물(6개) · 그림(7개) / · 글(16편)	
인권지 식터		· 인권용어 해설(934개) / · 결정례(12개) · 위원회 생산 지식 DB구축 (954개)	· 결정례(24개) · 위원회 생산 지식 DB구축 (636개)

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 2006 - 2008

